

2016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시 장애 관련 자치법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6. 11.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제 출 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서울시 장애 관련 자치법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11.

- 과제제안 : 우창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연구기관 : (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책임연구원 :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구원 :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현근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실장)
윤석권 (장애인가카데미 사무처장)
- 보조연구원 : 김의수 (사회적기업 웹와치주식회사 팀장)
- 보조원 : 이정현 (유니버설디자인협회 사무국장)
- 자문위원 : 이문성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수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과장)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상철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상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서울시 장애 관련 자치법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동기 외

요 약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령의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다른 장애관련 자치법규와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또 자치법규가 제정되면 이와 연동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장애를 가진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자치법규는 그 시행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특성을 잘 반영한, 다시 말해 다양한 장애유형, 성별, 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장애관련 자치법규가 이 같은 고려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서울특별시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률 환경 변화에 서울특별시의회가 다른 시도보다 앞서 새로 제·개정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및 목표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 전체 현황을 정리하고 수도 서울의 위상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연도별, 유형별, 내용별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도움을 주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입법 제안을 하고자 한다. 또 여타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서울특별시 시의회와 집행부가 향후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 및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장애관련 자치법규는 <표 1>에서 보듯이 조례가 21건이고 시행규칙은 2건이다.

	자치법규명	제정일	관리책임부서
1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95.03.20	생활보건과
2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05.07.21	장애인복지정책과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07.05.29	보행자전거과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08.01.31	보행자전거과
5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11.01.13	장애인복지정책과
6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11.01.13	장애인복지정책과
7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01.13	장애인자립지원과
8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11.07.28	장애인자립지원과
9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2.11.08	장애인복지정책과
10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12.03.15	장애인자립지원과
11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12.07.30	장애인자립지원과
1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12.09.28	보건의료정책과
1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13.03.28	기획담당관
14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13.08.01	장애인복지정책과
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13.08.01	장애인복지정책과
16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15.05.14	경제정책과
17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15.07.30	장애인자립지원과
18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16.01.07	장애인자립지원과
19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	16.01.07	보건의료정책과
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01.07	장애인복지정책과
21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16.01.07	인사과
22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16.03.24	정보기획담당관
2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16.05.19	도시공간개선단

<표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현황

이 연구에서 말하는 “장애관련 조례”란 조례명에 “장애” 또는 “장애인”이 포함된 조례, 둘째 조례명에 “한센인”, “정신질환자” 등 장애를 유발하는 특정한 손상이나 질병이 포함된 조례, 셋째 법익의 주요 대상자가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는 “교통약자”, “관광약자”, “주거약자” 등과 관련된 조례를 가리킨다.

4. 연구 방법

가. 법리 검토

자치법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하고 그 규율 범위도 제한적이다. 장애관련 자치법규 역시 이 같은 제한에 구속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연구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법리적 관계부터 분석하였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관계, 헌법재판소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의 한계, 자치조례의 중요성 등이 주요 검토 내용이다.

나. 선행 연구 검토

우리나라에서는 장애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엄밀한 분석기법을 통해 정밀하게 연구된 선행 연구는 전무한 상태다. 다만, 정밀함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조사하거나 연구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다. 분석틀 개발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윤찬영(2004)과 최승원 등(2012)의 연구를 토대로 규범적 타당성과 규범적 실효성이란 큰 틀에서 현행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만들었다. 규범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지표로는 법령상 체계 정합성, 권리 및 인권 보장성, 자주성, 민주성 등이 있고, 규범적 실효성을 분석하는 지표에는 실현 가능성 및 강제성,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등이 포함되었다.

라. 비교분석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과 법무부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하여 ‘장애’, ‘장애인’, ‘교통약자’, ‘관광약자’, ‘주거약자’, ‘한센병’, ‘정신질환’, ‘정신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수화’, ‘웹접근성’ 등의 키워드로 전국의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검색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다른 광역자치단체(필요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 비교하였다.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의 내용 역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사례와 비교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마. 자문회의와 FGI

연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수행 과정에서 법학자, 시의원, 공무원, 장애 당사자, 사회복지 교수 및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고, 이와 별도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 이 자문을 통해 연구의 계획부터 최종 결과물 제출 때까지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였다.

II.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 분석틀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 분석틀은 <표 2>와 같다.

규범적 타당성	법령상 체계 정합성	헌법과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다른 자치법규와 법체계상 모순·충돌이 없는지, 자치법규가 법령을 단순 재기재하는지에 관한 사항임.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자치법규가 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르는 서울특별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사항임.
	자주성 및 창의성	자치법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선도적으로 먼저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다른 시도에 비해 더 창의적인지와 관련된 사항임.
	민주성 (주민참여)	자치법규가 그 내용을 개정하거나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장애 당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사항임.
	대상자 요건 및 범위의 적정성	대상자의 요건 및 범위가 자치법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정한지와 관련된 사항임.
규범적 실효성	실행가능성 및 강제성	서울특별시가 자치법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 또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치법규의 내용이 강행규정인지 또는 임의규정인지와 관련된 사항임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와 관련된 사항임

<표 2>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 분석틀

III. 장애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 현황

1. 전국 장애관련 법률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등재된 대한민국 의회가 제정 또는 비준한 장애관련 법률(조약포함)은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 19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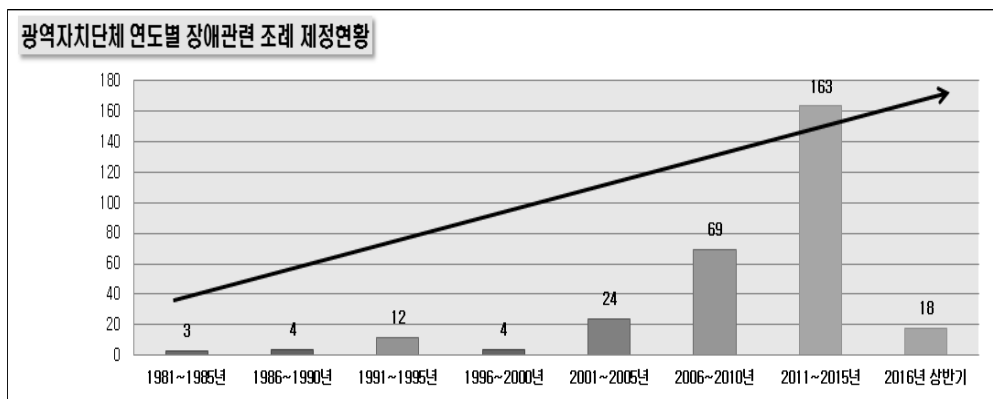
연번	법 른 명	제정 연도	분야별
1	특수교육진흥법(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개정)	1977	교육보장
2	심신장애자복지법(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1981	기타
3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0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1990	고용안정
4	정신보건법(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1995	취약계층지원
5	장애인·임신부·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	편의증진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2005	편의증진
7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005	고용안정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007	인권증진
9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생활지원법률	2007	생활안정
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008	고용안정
1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	인권증진
12	장애인연금법	2010	생활안정
13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1	자립생활
1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1	취약계층지원
15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2	생활안정
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	취약계층지원
1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015	기타
18	한국수화언어법	2015	취약계층지원
1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법	2015	편의증진

<표 3> 장애관련 법률 목록

2. 전국 광역자치단체 장애관련 조례 현황

가.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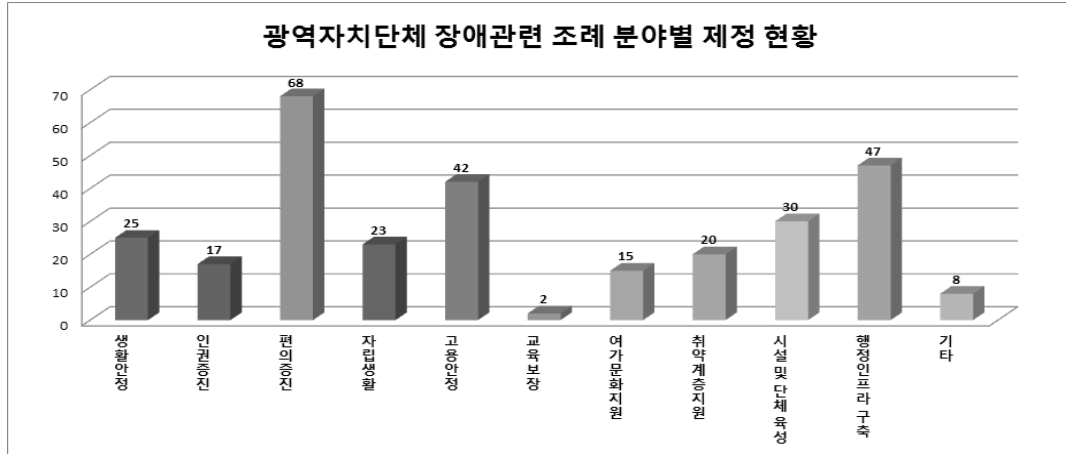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장애관련 조례 제정 추이를 그림으로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국 광역자치단체 연도별 장애관련 조례 제정 현황

나. 분야별 현황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분야별 장애관련 조례 제정 추이를 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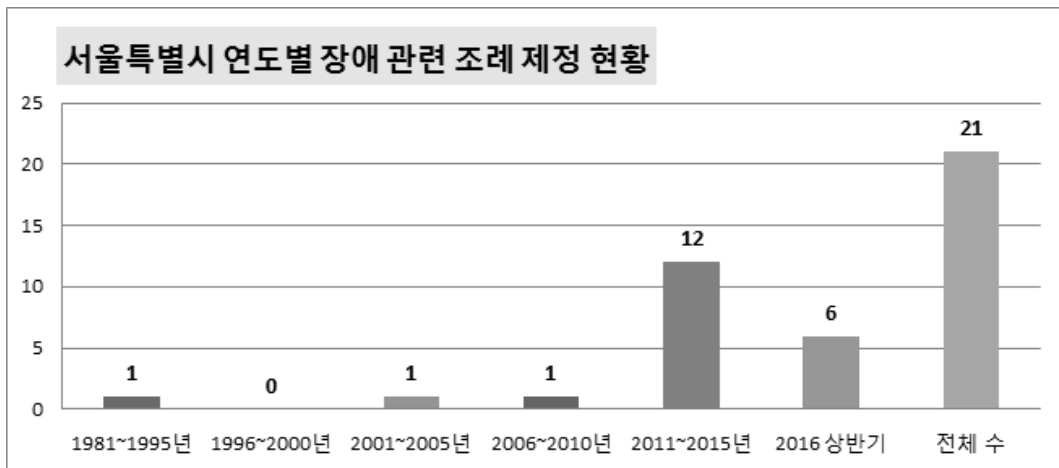


<그림 2> 전국 광역자치단체 장애관련 조례 분야별 제정 현황

3.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조례 현황

가.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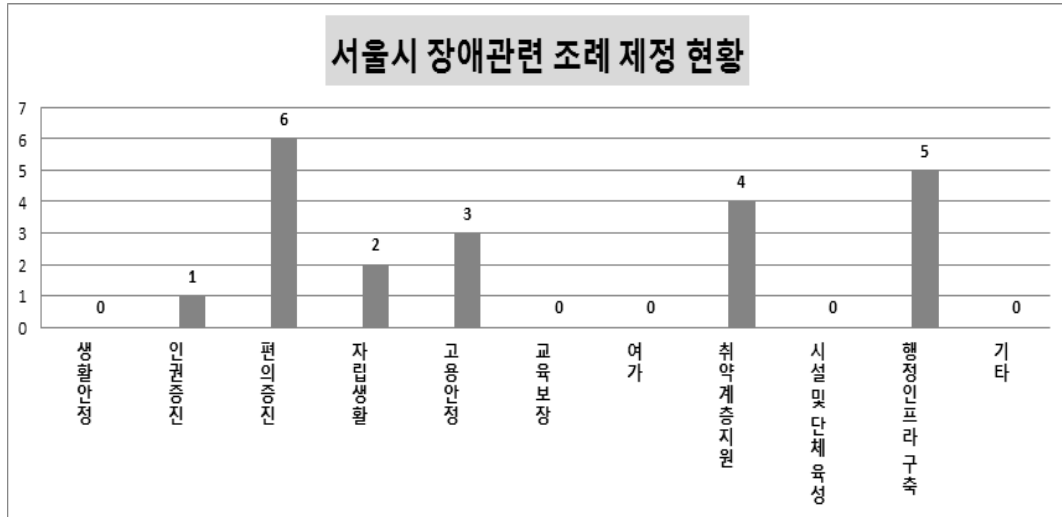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연도별 조례 제정 현황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서울특별시 연도별 장애관련 조례 제정 현황

나. 분야별 현황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조례 21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조례 제정 현황

IV. 서울특별시 현행 장애관련 조례 분석 및 개선 사항

1.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조례는 교통약자법에 따른 전국 최초 조례지만, 그동안 변화된 법률 및 개정에 의한 변화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제정 당시 포함되었던 이동편의위원회 관련 규정이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고,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교통사업자,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방법과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조례의 구성과 기술이 지나칠 정도로 간결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비해 조문의 수가 적어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가 어려워 보인다. 교통약자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경우처럼 조문을 더 늘리고 가능하면 장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보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이동지원센터조례는 이용 대상자를 위한 조례도 아니고 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한 조례도 아니고, 센터 그 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장애관련 조례의 경우, 조례에 따른 권리 주체 또는 서비스 대상자 위주로 구성되는데 이 조례는 서비스 전달기관 그 자체를 지원하는 규정 위주이고 생활·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는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 조례에서는 그 수단이 목적으로 전도되었다. 따라서 조례명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가 아닌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에 센터의 의무·기능·설치 및 운영, 이용 대상자, 센터에 대한 감시·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조례는 「서울특별시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전달기관에 관한 조례다. 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에 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주민복리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다른 서비스 전달기관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이 조례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는다. 특히,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에 서울특별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수화통역센터조례를 그 속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조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관심을 많이 둔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더해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다른 자치단체 조례들처럼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 아울러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이념' 또는 '기본원칙'을 조례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5.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위원회 조례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그리고 표준조례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이어서 다른 자치단체들의 경우도 그렇지만 자주성과 창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서울특별시 조례는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맡는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처럼 여성(장애인) 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민주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도 사례를 찾기 어렵지만 서울특별시 조례가 선도적으로 위원 구성에서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6.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출산지원조례는 대전광역시 조례를 그대로 모방하다보니 출산지원금 지원 규정이 없고, 적용 범위가 장애인가정이 아니라 여성장애인으로 한정되고, 여성장애인이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등 전체적으로 미비한 조례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의 위상에 맞게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전반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7.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조례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먼저 제정되었으나 다른 자치단체 조례와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는 조항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서울특별시 조례 제3조에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또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으나 이는 조례의 문제라기보다 상위법령이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다.

8.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자립생활조례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실효성과 선도성이 돋보이는 조례이다. 특히, '지역사회전환 서비스', '시설퇴소자 지원' '주거생활 지원',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자립생활가정 제공' 같은 혁신적인 탈시설 관련 조항들은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 조례는 정신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조례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는 시행규칙의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제2조와 관련된 오기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자립생활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자립생활에 관한 '기본이념' 또는 '기본원칙'을 추가하여 권리성과 인권보장성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을 둬으로써 시민의 대표들이 추진 과정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중증장애인생산시설 관계자들이 이른바 ‘더블카운팅’ 때문에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뿐 아니라 친환경, 여성기업인, 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한 제품도 별도의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율이 정해져 있는 까닭에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2~3가지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제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불만이다. 이 같은 현실은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종사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블카운팅’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10.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조례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비교적 체계적이고 규율 내용이나 범위도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다. 다만,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 발달장애 당사자 또는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차별을 받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세부시책을 추가하고, 조례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기본이념’ 또는 ‘기본원칙’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례는 없지만, ‘장애인 움부즈만’ 제도를 장애인인권조례에 도입하면 조례의 실효성이 훨씬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11.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센병관리위탁조례 제2조가 예시한 위탁사업 내용 중 “8. 부랑한센병 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과 “9.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유도 및 관리”는 “계몽”, “선도”, “유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법을 사용하고, 또 질병 그 자체가 아닌 질병을 가진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센인을 위한 의료지원뿐 아니라 생활안정과 인권을 보장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수탁단체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2.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조례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위원회로 격상시켜 서울특별시가 체계적으로 장애인기업지원 활동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3.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최적관람석조례는 현재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적관람석 규정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자치단체들의 경우처럼 일반 장애인관람석의 50%가 아니라 100%까지 최적관람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 당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연장부터 100%를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14.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조례는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 제4조의 “장애인의 자립노력”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구시대적인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그 대신 “장애인의 권리” 조항을 그 자리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반대로 장애인고용위원회 설치 같은 선도적이고 진취적인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15.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의원조례는 장애의원에게 물리적 접근만 보장하고 있다. 이는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만을 고려한 것이어서 강원도와 경상북도 조례처럼 시각장애의원 또는 청각장애의원을 위한 정보접근도 보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16.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조례는 새로운 상위법령이 시행되면 용어의 변화부터 주요 사업의 추가까지 큰 폭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때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 가령 계획수립에서 정신장애 당사자의 참여 및 의견청취, 그리고 수립된 계획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을 뒀으로써 조례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더욱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17.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조례는 정신건강조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위법령이 시행되면 용어의 변화부터 주요 사업의 추가까지 큰 폭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때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 가령 사회복지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원회에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이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사회참여를 더욱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18.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조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례들보다 조문 구성이 짜임새가 있고 구체적이다. 다만,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 관련 조항이 없고,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정보접근 및 제품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차후 보완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아울러 조례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시행규칙 제정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19.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웹접근성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는 등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모니터링, 기술상담, 품질인증 등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범위를 기존의 웹사이트뿐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까지 확대하고, 웹접근성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V. 서울특별시 신규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 방안

1.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하고, 제2항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15조의4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화·예술활동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4곳이고, 기초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동구와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경기도 김포시, 경상남도 거제시, 전라남도 나주시 등이 있다.

2.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14년 5월 28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의 관광 및 여행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 제47조의3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제47조의4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제47조의5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장애인, 노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뿐이다.

3.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는 일반 평생교육기관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별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대상자의 장애유형만 다를 뿐 내용이 동일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처음 만든 곳은 기초자치단체인 경상남도 사천시이다. 이어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이다.

4. 서울특별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조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광역시에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5.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할 의무, 장애인에게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할 의무,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해 홍보할 의무를 규정한다. 아직 법률 시행 이전이어서 장애인 건강권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많지 않고, 2015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가 유일한 입법례이다.

6.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조례

「장애인복지법」 제6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주광역시 동구, 경기도 연천군과 하남시, 충청남도 홍성군, 경상북도 포항시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보조기구 수리’ 또는 ‘보조기구 서비스’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7.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과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민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기도 평택시와 전라남도 여주시가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이름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VI. 결론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에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 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한다. 장애관련 조례를 입법할 때 기본적으로 ‘계획수립’, ‘실태조사’, ‘의견청취’를 서로 연관된 하나의 묶음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라 하더라도 장애여성, 중증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저출현 장애인 등 이른바 ‘장애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 범주에 속한 장애인들은 더 많은 인권침해와 더 적은 사회적 지위로 인한 다중 차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요 장애관련 조례의 경우 ‘기본이념’ 또는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그 조례의 철학, 가치, 지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조례에 ‘기본이념’이나 ‘기본원칙’ 조항을 둘 필요는 없겠으나, 적어도 주요 조례에는 이 조항을 기재함으로써 조례 집행자들이 조례 제정의 배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장애관련 조례의 시행과 관련된 자문기구를 다른 위원회에 통폐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조례의 경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지방교통위원회’에,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희망경제위원회’에, 그리고 ‘웹접근성위원회’가 ‘정보화전략위원회’에 통합되었다. 자문(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전문성 제고 측면도 있지만 이해 관계자 등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회의 통폐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추진 상황을 지방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실제로 해당 조례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독립적인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시의회가 조례 시행 과정에서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 차

I .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목표	2
3. 연구 범위 및 대상	3
4. 연구 방법	4
가. 법리 검토	4
나. 선행 연구 검토	4
다. 분석틀 개발	5
라. 비교분석	5
마. 자문회의와 FGI	6
II .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 분석틀	7
1. 법리 검토	7
가. 상위법령과 조례의 관계	7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조례의 관계	8
2. 선행 연구 검토	9
3. 장애관련 자치법규 분석틀	11
III . 장애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 현황	13
1. 전국 장애관련 법률 현황	13
2. 전국 광역자치단체 장애관련 조례 현황	14

가. 연도별 현황	14
나. 분야별 현황	16
다. 연도별, 분야별 현황	18
3.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조례 현황	19
가. 연도별 현황	19
나. 분야별 현황	20
IV. 서울특별시 현행 장애관련 조례 분석 및 개선 사항	21
1.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1
가. 일반 사항	21
나. 내용 분석	22
다. 소결 및 제언	29
2.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30
가. 일반 사항	30
나. 내용 분석	30
다. 소결 및 제언	33
3.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4
가. 일반 사항	34
나. 내용 분석	34
4.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6
가. 일반 사항	36
나. 내용 분석	37
다. 소결 및 제언	42
5.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43
가. 일반 사항	43
나. 내용 분석	43
다. 소결 및 제언	47

6.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48
가. 일반 사항	48
나. 내용 분석	49
다. 소결 및 제언	53
7.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	54
가. 일반 사항	54
나. 내용 분석	55
다. 소결 및 제언	57
8.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58
가. 일반 사항	58
나. 내용 분석	58
다. 소결 및 제언	63
9.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64
가. 일반 사항	64
나. 내용 분석	64
다. 소결 및 제언	67
10.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68
가. 일반 사항	68
나. 내용 분석	69
다. 소결 및 제언	74
11.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75
가. 일반 사항	75
나. 내용 분석	75
12.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77
가. 일반 사항	77
나. 내용 분석	78
다. 소결 및 제언	81

13.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82
가. 일반 사항	82
나. 내용 분석	83
다. 소결 및 제언	85
14.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86
가. 일반 사항	86
나. 내용 분석	87
다. 소결 및 제언	90
15.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91
가. 일반 사항	91
나. 내용 분석	91
다. 소결 및 제언	93
16.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4
가. 일반 사항	94
나. 내용 분석	95
다. 소결 및 제언	98
17.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99
가. 일반 사항	99
나. 내용 분석	99
다. 소결 및 제언	101
18.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102
가. 일반 사항	102
나. 내용 분석	103
다. 소결 및 제언	105
19.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106
가. 일반 사항	106
나. 내용 분석	106
다. 소결 및 제언	110

V. 서울특별시 신규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 방안	111
1.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112
가. 필요성 및 의의	112
나. 법률적 근거	112
다. 입법 사례	113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13
2.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115
가. 필요성 및 의의	115
나. 법률적 근거	115
다. 입법 사례	116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16
3.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119
가. 필요성 및 의의	119
나. 법률적 근거	119
다. 입법 사례	120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20
4. 서울특별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조례	122
가. 필요성 및 의의	122
나. 법률적 근거	122
다. 입법 사례	122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23
5.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125
가. 필요성 및 의의	125
나. 법률적 근거	125
다. 입법 사례	126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26
6.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조례	128
가. 필요성 및 의의	128

나. 법률적 근거	128
다. 입법 사례	129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29
7.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131
가. 필요성 및 의의	131
나. 법률적 근거	131
다. 입법 사례	131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32
VI. 결론	134
참고문헌	137
부록 1 : 광역자치단체 장애관련 조례 연도별 제정 현황	139
부록 2 : 광역자치단체 장애관련 조례 목록	149

표 목차

〈표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현황	4
〈표 2〉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 분석틀	12
〈표 3〉 장애관련 법률 목록	13
〈표 4〉 광역자치단체 연도별 장애관련 조례 제정 현황	15
〈표 5〉 조례의 유형화	16
〈표 6〉 광역자치단체 분야별 장애관련 조례 제정 현황	17
〈표 7〉 광역자치단체 장애관련 조례 연도별·분야별 제정 현황	18
〈표 8〉 6대 광역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비교	27
〈표 9〉 자치단체별 교통약자조례 비교	28
〈표 10〉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조례 제6~제8조	38
〈표 11〉 자치단체별 발달장애인조례 비교	40
〈표 12〉 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비교	46
〈표 13〉 자치단체별 장애인위원회조례 비교	47
〈표 14〉 자치단체별 출산양육조례 비교	52
〈표 15〉 자치단체별 장애인공무원조례 비교	57
〈표 16〉 자치단체별(대도시) 자립생활조례 비교	61
〈표 17〉 자치단체별(대도시) 우선구매조례 비교	66
〈표 18〉 자치단체별 장애인인권조례 비교	73
〈표 19〉 자치단체별 장애인기업조례 비교	80
〈표 20〉 자치단체별 최적관람석조례 비교	84
〈표 21〉 자치단체별(대도시) 장애인고용조례 비교	89
〈표 22〉 자치단체별 장애의원조례 비교	93
〈표 23〉 정신건강증진법의 자치단체 위임사무	96
〈표 24〉 자치단체별 정신건강조례 비교	98
〈표 25〉 자치단체별 유니버설디자인조례 비교	105
〈표 26〉 자치단체별 웹접근성 조례 비교	109
〈표 27〉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 기초안	114

〈표 28〉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조례 기초안	118
〈표 29〉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기초안	121
〈표 30〉 서울특별시 주거약자 지원 조례 기초안	124
〈표 31〉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기초안	127
〈표 32〉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조례 기초안	130
〈표 33〉 서울특별시 수화언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기초안	133

그림 목차

〈그림 1〉 전국 광역자치단체 연도별 장애관련 조례 제정 현황	15
〈그림 2〉 전국 광역자치단체 장애관련 조례 분야별 제정 현황	18
〈그림 3〉 서울특별시 연도별 장애관련 조례 제정 현황	19
〈그림 4〉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의회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입법권을 부여한 것은 지방분권을 통하여 권력분립을 실현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지방의 문제는 주민이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지방 스스로의 책임 아래 자기 지방의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 국가운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연유한다. 뿐만 아니라 규범 정립자와 규범 수범자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 상황마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조소영, 2009).

이와 같은 조례는 법규성을 갖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려할 사항이 많다. 특히,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당해 지역 내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한다. 그러나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새로 제정할지 또는 기존 조례를 개정할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또 같은 조례라고 할지라도 자치단체마다 명칭과 수혜자에 대한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김영배, 2010).

최근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당사자들에 의해서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향후에도 이 같은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단체가 제안하고 있는 조례의 주된 내용은 장애유형별 복지계획의 수립,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기관으로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당시 5개이던 장애유형이 2010년 15개로 확대되면서 장애인의 욕구와 장애인 정책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 같은 요구가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주장하는 장애인운동과 결합되면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이중섭 외, 2012).

이런 추세는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010년 이전까지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조례는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1995년),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2007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08년) 등 4건에 불과했다.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평균 제정 건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서울특별시는 2011년부터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제정하기 시작하여 2016년 6월 30일 현재 23건(조례 21건, 시행규칙 2건)을 제정하였다.

이처럼 서울특별시가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많이 제정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령의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다른 장애관련 자치법규와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또 자치법규가 제정되면 이와 연동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시대와 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의 욕구 변화도 조례에 잘 반영하여야 한다. 특별히 자치법규의 주요 내용을 시행할 때 주민의 참여와 의견청취를 보장하는 조항이 두어 조례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장애를 가진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자치법규는 그 시행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특성을 잘 반영한, 다시 말해 다양한 장애유형, 성별, 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장애관련 자치법규가 이 같은 고려사항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서울특별시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1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고, 2014년에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여행에 관한 지원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 2015년 12월에는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6년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장애인복지법」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다. 이런 법률 환경 변화에 수도 서울의 의회가 다른 시도보다 앞서 새로 제·개정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장애를 가진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및 목표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 전체 현황을 정리하고 수도 서울의 위상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연도별, 유형별, 내용별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도움을 주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입법 제안을 하고자 한다. 또 여타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서울특별시 시의회와 집행부가 향후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장애관련 자치법규가 개정되고 제정될 때 장애 당사자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규 시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법익은 특정 기관이나 전달체계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의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자치법규가 단순히 법률 정합성과 법기술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정작 법익의 수혜자인 장애 당사자의 요구 및 이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연구 범위 및 대상

2016년 현재 서울특별시의회가 제정한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744건, 훈령과 예규 37건 등 모두 781건이다.¹⁾ 이 중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장애관련 자치법규는 <표 1>에서 보듯이 조례가 21건이고 시행규칙은 2건이다.

	자치법규명	제정일	관리책임부서
1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95.03.20	생활보건과
2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05.07.21	장애인복지정책과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07.05.29	보행자전거과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08.01.31	보행자전거과
5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11.01.13	장애인복지정책과
6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11.01.13	장애인복지정책과
7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01.13	장애인자립지원과
8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11.07.28	장애인자립지원과
9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2.11.08	장애인복지정책과
10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12.03.15	장애인자립지원과
11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12.07.30	장애인자립지원과
1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12.09.28	보건의료정책과
1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13.03.28	기획담당관
14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13.08.01	장애인복지정책과
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13.08.01	장애인복지정책과
16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15.05.14	경제정책과
17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15.07.30	장애인자립지원과
18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16.01.07	장애인자립지원과
19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	16.01.07	보건의료정책과

1) <http://legal.seoul.go.kr>. 2016. 6. 9

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01.07	장애인복지정책과
21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16.01.07	인사과
22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16.03.24	정보기획담당관
2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16.05.19	도시공간개선단

<표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현황

이 연구는 23건의 서울특별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기존에 개발된 조례 분석방법을 장애관련 조례 분석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만든 분석틀을 통해 내용 분석을 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유사 자치법규를 비교분석한다. 다만,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의 내용에 대한 분석에 주력하고, 자치법규의 제정 과정이나 관련 정책 및 예산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말하는 “장애관련 조례”란 조례명에 “장애” 또는 “장애인”이 포함된 조례, 둘째 조례명에 “한센인”, “정신질환자” 등 장애를 유발하는 특정한 손상이나 질병이 포함된 조례, 셋째 법익의 주요 대상자가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는 “교통약자”, “관광약자”, “주거약자” 등과 관련된 조례를 가리킨다.

4. 연구 방법

가. 법리 검토

자치법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하고 그 규율 범위도 제한적이다. 장애관련 자치법규 역시 이 같은 제한에 구속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연구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법리적 관계부터 분석하였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관계, 헌법재판소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의 한계, 자치조례의 중요성 등이 주요 검토 내용이다.

나. 선행 연구 검토

우리나라에서는 장애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엄밀한 분석기법을 통해 정밀하게 연구된 선행 연구는 전무한 상태다. 다만, 정밀함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조사하거나 연구한 문헌 3건을 확인하였다.

우선, 김미경 등(2006)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수행한 ‘인권관점에서

본 분야별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 '장애인 분야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각급 자치단체의 장애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또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2011)은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장애관련 자치법규 현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내고, 각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할 7대 장애관련 조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중섭 등(2012)은 전라북도발전연구원의 용역을 받아 전라북도 관내 장애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다른 시도에는 이미 제정되어 있지만 전라북도에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조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 분석틀 개발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윤찬영(2004)과 최승원 등(2012)의 연구를 토대로 규범적 타당성과 규범적 실효성이란 큰 틀에서 현행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만들었다. 규범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지표로는 법령상 체계 정합성, 권리 및 인권 보장성, 자주성, 민주성 등이 있고, 규범적 실효성을 분석하는 지표에는 실현 가능성 및 강제성,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등이 포함되었다.

라. 비교분석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과 법무부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한 다음, 키워드 검색 방법을 활용하여 전국 243곳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였다. 이때 사용된 주요 키워드는 '장애', '장애인', '교통약자', '관광약자', '주거약자', '한센병', '정신질환', '정신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수화', '웹접근성' 등이다. 이렇게 검색한 자료를 법규명, 제정연도, 법규의 성격, 소관 부서 등으로 구분하여 사전에 준비된 양식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위의 두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국의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급 자치단체의 법규 총계와 제정, 개정, 폐지, 입법 예고 상황 등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 시스템과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수록된 자치법규 현황이 편차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를 검색할 때는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모두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다른 광역자치단체(필요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 비교하였다.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의 내용 역시 다른 광역

자치단체의 사례와 비교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이때 개정이 필요한 기존 조례에 대한 분석과 장애인의 요구와 변화된 환경에 조응하는 새로운 입법 과제에 관한 분석으로 나눈다.

마. 자문회의와 FGI

연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수행 과정에서 법학자, 시의원, 공무원, 장애 당사자, 사회복지 교수 및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고, 이와 별도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 이 자문을 통해 연구의 계획부터 최종 결과물 제출 때까지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자립생활 운동, 장애여성운동, 국제장애운동, 소수장애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복지 및 인권 운동에 참여하는 장애 당사자들로 구성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수행하였다. 법익의 수혜자인 장애 당사자들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들어보고, 이들의 시각과 요구를 연구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의도였다.

II. 서울특별시 장애인관련 자치법규 분석틀

1. 법리 검토

가. 상위법령과 조례의 관계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또 동법 제23조는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놓고 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또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다. 비록 지방자치법에서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어서(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무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지만, 두 규범에 따라 모든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주민이 권리 제한, 의무부과,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저촉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조례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그 지역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므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까지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에 위임할 사항은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²⁾며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반면, 다른 판례를 보면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³⁾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둘러싼 논란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고 중앙집권적 입법과 행정이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제약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따

2) 헌재 2004. 9. 23. 2002헌바76

3) 대법원 2004.4.23. 선고 2002추16판결

라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위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실무행정법에 대한 이론과 지식, 소관 법령 담당자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위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영역이다.(행정안전부, 2012)

한편,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 법률들은 대부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사무를 위임하지 조례에 직접 위임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실제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검색한 장애관련 법령 19건 중 특정 조항의 세부사항을 조례나 교육규칙에 위임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비용의 부담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비용의 부담), 「교통약자의 편의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상위법인 법령의 위임에 의한 위임조례보다 자치조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우리나라 자치법규의 한 특징이다.

끝으로, 법기술 및 체계성 측면에서 볼 때 법령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자치법규에 재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판례는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⁴⁾고 보고 있지만,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재기재는)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⁵⁾ 따라서 지방의회는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재하는 수준의 자치법규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자치조례 제정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조례의 관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령과의 관계와 함께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4) 대법원 1997.04.25. 선고 96추244 판결

5) 법제처 2012. 6. 29. 회신, 의견제시 12-0179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조례의 관계이다.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 즉,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및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⁶⁾ 이는 조례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무효가 되므로,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2. 선행 연구 검토

우리나라에서 장애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원인을 추측컨대, 우선 장애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부족하고, 관심을 가지더라도 자치법규의 수와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법규를 분석하는데 준거가 되는 분석틀조차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극히 제한적이지만 지금까지 제출된 선행 연구를 보면, 장애관련 자치법규 제정 과정에 관한 연구와 자치법규 내용에 관한 연구로 나뉜다.

자치법규 제정 과정에 관한 연구부터 살펴보면, 정추영(2002)은 기초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시설 내 자판기 등 우선계약에 관한 조례의 제정 과정을 비교 연구하였다. 우필호(2005)는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들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조례의 제정 과정, 조례 발의 유형, 민관 거버넌스 구조 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참조 대상이기도 한 조례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김미경 등(2006)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관할 지역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자치단체 21곳에 한정하여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비교 연구하였다. 김미경 등은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자립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이동권 보장 및 편의시설

6)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교육비 지원대상을 '화천군에 보호자와 학생이 주소를 두고 관할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함께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도 규정함으로써 원고인 화천군수에게 교육비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관계 법률과 조례안의 규정 내용 및 이 사건 조례안에 따른 교육비 지원사무에 소요될 비용이 화천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례안이 교육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로 하여금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확보, 모성보호, 체육활동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정비와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특별히 장애인 복지와 인권증진 기본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고용창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셋째, 인권관련 조례의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입법화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조례가 지역사회 내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조례에서 아무리 장애인 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 보장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례의 규정은 선언적 구호에 그친다.

한편,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009년부터 전국의 자치법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09년에 장애인관련 자치법규모니터링 결과보고서(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11)를 발표하였다. 이 단체는 국내 최초로 전국 243곳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85,354건을 모니터링하고 자치단체에 장애차별적 조항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단순한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실천운동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를 결성하고 2012년 3개년 활동결과 보고서(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12)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장애인관련 조례가 1,300건(당시 기준) 제정되었지만 자립생활과 소득보장 등 장애인을 실질적인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96,224건(당시 기준) 조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할 소지가 있는 장애차별적 조항이 모두 1,727건 확인되었다. 또 보고서는 각급 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7대 장애인관련 조례를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은 조례가 선정되었다. △장애인 가정/여성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혈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 특별교통 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중섭 등(2012)은 전라북도 장애인관련 조례 제·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등재한 전국 16곳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전라북도 자치법규와 비교 분석하였다. 다른 시도에는 이미 제정되어 있지만 전라북도에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조례가 중점 분석 대상이었다. 내용 측면에서는 향후 장애인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제·개정이 요구되는 조례의 입법 목적과 전달체계와의 관계성을 재정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 장애인 복지조례와 장애인복지예산을 상호교차 분석하여 조례와 정책의 질적 향상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중섭 등은 첫째 장애인복지 조례와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통합성을 유지할 것, 둘째 장애인관련 조례와 장애인복지재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 셋째 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관련 조례의 기본원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수와 그 지역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해

이중섭 등은 장애관련 조례의 상당수가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규정의 이행을 강제하는 강행규정보다는 대부분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3. 장애관련 자치법규 분석틀

국내에서 장애관련 자치법규 분석틀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일반적인 자치법규를 분석하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는 연구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 분석틀을 만들었다.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규가 말 그대로 법이기 위해서, 즉 법이 법답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 효력이 없는 법은 명실상부한 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법의 효력이란 규범적인 타당성과 실효성이 합치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규범적으로 정당성 또는 타당성을 갖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법은 유명무실하여 사문화될 것이고, 반대로 정당성은 없더라도 실효성만을 갖는다면 이는 곧 악법인 것이다.

그래서 윤찬영(2004)은 자치법규 역시 법규범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로서 규범적인 타당성과 이를 현실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실효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규범적 타당성이란 법의 내용이 법이 본질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 사회가 요구하는 법의식과 사회적 통념에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그 법은 규범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규범적 타당성에는 통상적으로 권리성,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의 적정성, 급여구성요건의 적절성 등이 포함된다. 또 규범적 실효성이란 규범적으로 타당한 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적 장치들을 의미한다. 특히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이 실질적인 내용 차원에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강제성과 재원조달방법의 구체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승원 등(2012)은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을 위한 개선도 측정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는데, 개선도 측정기준을 규범적 측면, 절차와 참여측면, 내용측면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규범적 측면에서는 법률우위 원칙, 법률유보원칙, 규율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절차와 참여측면에서는 조례제정의 사전절차, 조례발의 절차, 조례안 심의 및 의결절차, 조례집행과정, 환류과정으로 구분하여, 셋째, 내용측면에서는 내용적 측면, 법제전담조직 관련, 법제전문인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측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윤찬영(2004)와 최승원 등(2012)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윤찬영(2004)이 제시한 규범적 타당성과 규범적 실효성을 큰 틀로 반영하고, 여기에 장애관련 자치법규의 특수성을 가미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 분석틀을 만들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때문

에 자치법규 제정 과정은 논외로 한다.

규범적 타당성	법령상 체계 정합성	헌법과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다른 자치법규와 법체계상 모순·충돌이 없는지, 자치법규가 법령을 단순 재기재하는지에 관한 사항임.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자치법규가 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르는 서울특별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사항임.
	자주성 및 창의성	자치법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선도적으로 먼저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다른 시도에 비해 더 창의적인지와 관련된 사항임.
	민주성 (주민참여)	자치법규가 그 내용을 개정하거나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장애 당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사항임.
	대상자 요건 및 범위의 적정성	대상자의 요건 및 범위가 자치법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정한지와 관련된 사항임.
규범적 실효성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서울특별시가 자치법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 또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치법규의 내용이 강행규정인지 또는 임의규정인지와 관련된 사항임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와 관련된 사항임

<표 2>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 분석틀

Ⅲ. 장애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 현황

1. 전국 장애관련 법률 현황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하기 전에 우선 장애관련 법률 현황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자치법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등재된 대한민국 의회가 제정 또는 비준한 장애관련 법률(조약포함)은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 19건이다.

연번	법률명	제정연도	분야별
1	특수교육진흥법(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개정)	1977	교육보장
2	심신장애자복지법(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1981	기타
3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0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1990	고용안정
4	정신보건법(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1995	취약계층지원
5	장애인·임신부·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	편의증진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2005	편의증진
7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005	고용안정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007	인권증진
9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생활지원법률	2007	생활안정
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008	고용안정
1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	인권증진
12	장애인연금법	2010	생활안정
13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1	자립생활
1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1	취약계층지원
15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2	생활안정
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	취약계층지원
1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015	기타
18	한국수화언어법	2015	취약계층지원
1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법	2015	편의증진

<표 3> 장애관련 법률 목록

위 표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우리나라 장애관련 법률은 2000년 이후 집중적으로 제정되었다. 19건의 법률 중 2000년 이전에 제정된 것은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정신보건법」, 「장애인·임신부·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5건에 불과했다. 교육, 복지일반, 고용, 정신장애인, 이동편의 등 장애인의 삶에서 기초적인 분야만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던 시기다. 장애관련 법률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교육보장’ 1건, ‘고용안정’ 3건, ‘취약계층지원’ 4건, ‘편의증진’ 3건, ‘인권증진’ 2건, ‘생활안정’ 3건, ‘자립생활’ 1건, 기타 2건 등이다.

2. 전국 광역자치단체 장애관련 조례 현황

가. 연도별 현황

1982년 5월 31일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관련 조례인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데 이어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83년)와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1984년)가 제정되었다. 그 뒤 아래 <표 4>에서 보듯이, 2001년부터 조례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2011년부터는 증가세가 가파르다. 2016년 6월 30일 현재 전국 17곳 광역자치단체 장애관련 조례는 모두 297건이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28건), 전라북도(26건), 광주광역시(25건), 제주특별자치도(23건), 대전광역시(22건), 그리고 서울특별시(21건) 순으로 많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서울특별시의 장애관련 조례는 도시의 규모와 위상을 감안하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6년 6월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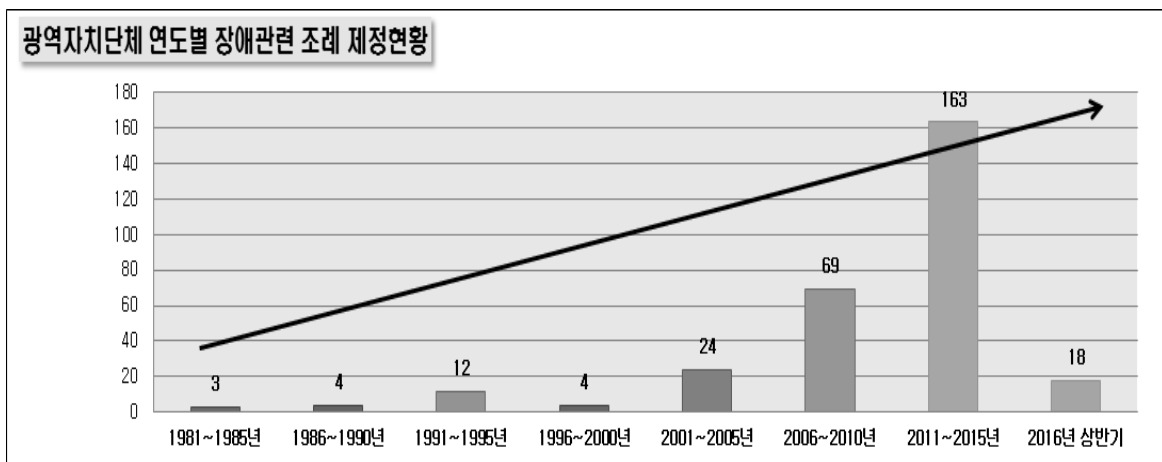
(단위: 건, %)

자치단체	조례수	제정 시기							
		81~85	86~90	91~95	96~00	01~05	06~10	11~15	16 (상반기)
서울	21	0	0	1	0	1	1	12	6
부산	18	0	1	1	0	1	1	14	0
대구	13	2	0	1	0	1	4	5	0
인천	16	0	0	1	1	2	5	7	0
광주	25	0	0	0	1	3	7	14	0
대전	22	0	0	1	0	1	6	13	1
울산	8	0	0	0	0	0	1	7	0
세종	11	0	0	0	0	0	0	11	0

경기	28	1	0	1	0	3	9	11	3
강원	13	0	1	0	0	3	4	5	0
충북	8	0	0	0	1	1	0	4	2
충남	17	0	1	0	0	3	5	7	1
전북	26	0	1	1	0	1	4	16	3
전남	18	0	0	1	0	1	4	12	0
경북	15	0	0	2	0	2	1	10	0
경남	15	0	0	2	1	1	6	5	0
제주	23	0	0	0	0	0	11	10	2
계	297	3	4	12	4	24	69	163	18
비율	100	1.0	1.3	4.0	1.3	8.1	23.2	54.9	6.1

<표 4> 광역자치단체 연도별 장애관련 조례 제정 현황

제정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1~1995년 사이에 조례가 많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1992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자치입법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조례가 급증한 것은 이때부터 중증 장애인들이 주도한 장애인이 동권연대와 자립생활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에 장애인들은 장애 문제를 정치적, 사회적 쟁점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관련 입법을 통해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회와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여야 장애 당사자 의원들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장애관련 조례 제정 추이를 그림으로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국 광역자치단체 연도별 장애관련 조례 제정 현황

나. 분야별 현황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장애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을 기준으로 ‘생활안정’, ‘인권증진’, ‘편의증진’, ‘자립생활’, ‘고용안정’, ‘교육보장’, ‘여가문화지원’, ‘취약계층지원’, ‘시설 및 단체육성’, ‘행정인프라 구축’, ‘기타’ 등 11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각 조례 유형에 해당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표 5>와 같다.

조례 유형	조례의 주요 내용
생활안정	생계비, 주거비, 양육비, 의료비 지원
인권증진	인권증진, 사회인식개선, 학대예방 및 피해자 지원
편의증진	편의시설확충, 주거환경개선, 정보통신 및 교통환경 개선 지원
자립생활	활동지원급여, 보장구지원
고용안정	직업재활 및 취업지원
교육보장	교육사업 및 교육기반조성 지원
여가문화지원	문화 및 체육행사, 여가활동지원
취약계층 지원	장애아동, 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원
시설 및 단체 육성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단체 지원
행정인프라 구축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의원, 각종 위원회 지원
기타	모범장애인상 등

<표 5> 조례의 유형화

이 분류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장애관련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다. 전체 장애관련 조례 297건 가운데 ‘편의증진’ 조례 68건(22.9%)이 가장 많고 이어서 ‘행정인프라 구축’ 조례 47건(15.8%), ‘고용안정’ 조례 42건(14.1%), ‘시설 및 단체 육성’ 조례 30건(10.1%) 순이다. 반면에 ‘교육보장’ 조례 2건(0.7%), ‘여가문화지원’ 조례 15건(5.1%), ‘인권증진’ 조례 17건(5.7%)순으로 적다.

2016년 6월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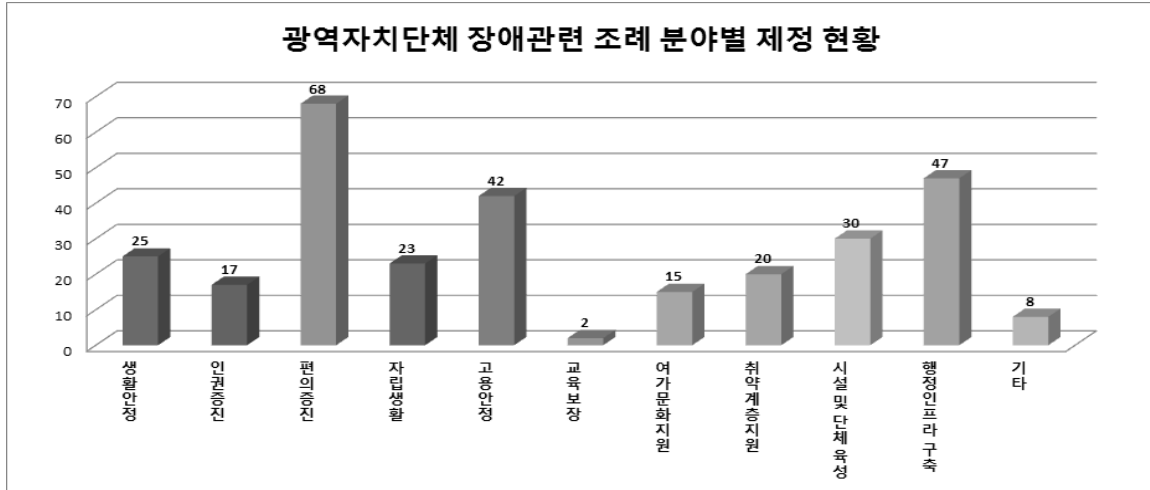
(단위: 건, %)

자치 단체	조례 수	분야										
		생활 안정	인권 증진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교육 보장	여가 문화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시설 단체 육성	행정 인프라	기타
서울	21	0	1	6	2	3	0	0	4	0	5	0
부산	18	1	1	5	1	3	0	0	2	2	3	0
대구	13	1	1	3	1	2	0	0	0	2	3	0
인천	16	1	1	3	1	3	0	2	0	1	3	1
광주	25	2	1	8	2	2	0	3	2	2	3	0
대전	22	1	1	4	2	4	0	1	3	3	3	0
울산	8	0	0	2	1	2	0	0	0	1	2	0
세종	11	2	1	3	1	1	0	0	0	0	2	1
경기	28	2	1	8	1	2	1	1	3	4	4	1
강원	13	1	2	3	1	1	0	0	0	2	2	1
충청	8	1	0	0	1	2	0	1	0	1	2	0
충청	17	2	1	3	2	2	0	0	1	2	3	1
전라	26	3	1	6	2	3	1	2	2	4	2	0
전라	18	1	2	5	2	3	0	0	1	1	2	1
경상	15	1	1	2	1	3	0	1	1	2	3	0
경상	15	3	0	2	1	3	0	1	0	2	2	1
제주	23	3	2	5	1	3	0	3	1	1	3	1
합계	297	25	17	68	23	42	2	15	20	30	47	8
비율	100	8.4	5.7	22.9	7.7	14.1	0.7	5.1	6.7	10.1	15.8	2.7

<표 6> 광역자치단체 분야별 장애관련 조례 제정 현황

이 통계를 통해 볼 때,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회참여에 필수조건인 이동권/접근성 관련 조례가 가장 절실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행정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지시설과 단체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조례가 상대적으로 많고, 이와 반대로 교육, 여가와 문화,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우리나라 장애관련 조례들이 개인의 삶보다는 여전히 복지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분야별 장애관련 조례 제정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전국 광역자치단체 장애관련 조례 분야별 제정 현황

다. 연도별, 분야별 현황

<표 7>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제정 연도와 분야로 분석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시대별로 어떤 유형의 조례가 선호되었는지 알 수 있다.

2016년 6월30일 기준

(단위: 건)

연도별	조례 수	분야별											
		생활 안정	인권 증진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교육 보장	여가 문화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시설 단체 육성	행정 인프라	기타	
81~85	3	0	0	0	0	0	0	0	0	0	3	0	0
86~90	4	0	0	0	0	0	0	0	0	0	4	0	0
91~95	12	0	0	0	0	0	0	0	0	0	6	6	0
96~00	4	0	0	0	0	0	0	0	0	0	2	2	0
01~05	24	1	0	4	0	0	0	0	0	0	3	12	4
06~10	69	4	2	19	10	11	0	5	3	4	8	8	3
11~15	163	20	15	40	13	30	1	8	12	8	15	15	1
16(상반기)	18	0	0	5	0	1	1	2	5	0	4	4	0
합계	297	25	17	68	23	42	2	15	20	30	47	4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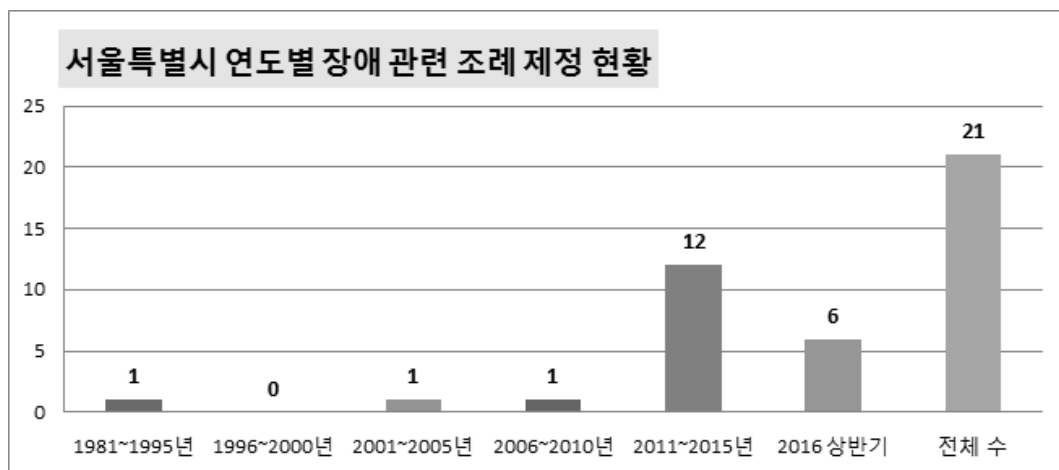
<표 7> 광역자치단체 장애관련 조례 연도별·분야별 제정 현황

위 표에서 보듯이, 2000년 이전 제정된 23건의 조례는 ‘시설 및 단체 육성’ 조례(15건)와 ‘행정인프라 구축’ 조례(8건)에 집중되어 있다. 장애인 복지의 기틀이 허약하던 시절, 우선 장애인 시설과 단체를 육성하고 행정인프라를 구축하여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가장 많이 제정된 조례는 ‘편의증진’ 조례(23건)이다. 이는 2000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활동으로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것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이후에는 ‘편의증진’ 조례(45건)가 역시 가장 많이 제정되었지만 ‘고용안정’ 조례(31건), ‘생활안정’ 조례(20건), ‘행정인프라 구축’ 조례(19건), ‘취약계층지원조례’ 조례(17건), ‘인권증진’ 조례(15건) 등 다양한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 수요가 그만큼 다양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조례 현황

가.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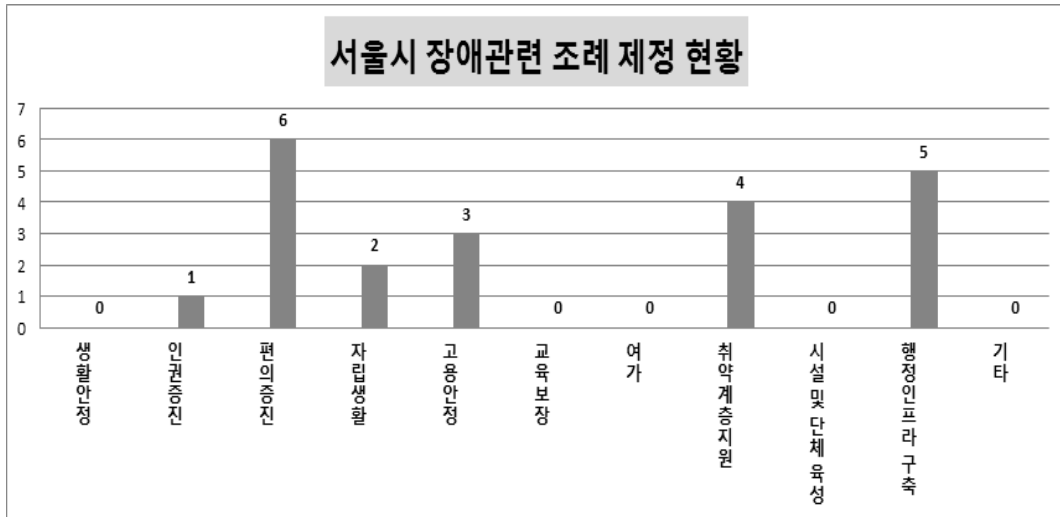
최초의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조례는 1995년 3월20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이다. 그 뒤 2010년 이전까지도 서울특별시 조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수도 서울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조례 제정 속도가 매우 늦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가 조례 제정에 본격 나선 것은 2011년 이후이며, 최근 5~6년 사이에 제정된 조례가 전체 조례 21건 중 18건이나 된다. 서울특별시 연도별 조례 제정 현황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서울특별시 연도별 장애관련 조례 제정 현황

나. 분야별 현황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조례 21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그림 4>에서 보듯이 ‘편의 증진’ 조례가 6건으로 제일 많고 이어서 ‘행정인프라 구축’ 조례 5건, ‘취약계층지원’ 조례 4건, ‘고용안정’ 조례 3건 순이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장애관련 조례 분야별 현황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4>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조례 제정 현황

IV. 서울특별시 현행 장애관련 조례 분석 및 개선 사항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 분석틀’에 따라 ‘법령상 체계 정합성’,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자주성 및 창의성’, ‘민주성(주민참여)’, ‘대상자의 요건 및 범위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지표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조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없어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가. 일반 사항

1) 조례 개요

제정일	2007. 5. 29	소관부서	보행자전거과
근거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조례 유형	위임조례
분야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 <input type="checkbox"/> 인권증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편의증진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보장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지원 <input type="checkbox"/> 행정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시설/단체육성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 저상버스 운영 ▪ 이동지원센터 운영 ▪ 특별교통수단 운영 		
제정 현황	충북을 제외하고 서울 등 광역자치단체 16곳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취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교통약자조례’)는 서울

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관련 조례는 전국 17곳 시도 중 충청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되었다. 그 중 서울특별시 조례(2007년 5월)와 대구광역시 조례(2007년 10월)가 가장 빨리 제정되었다.

교통약자조례의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법은 2000년도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사 사건을 계기로 중증 장애인이 중심이 된 장애인이 동권연대가 주도하여 입법되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까닭에 이 법률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더불어 대표적인 장애인 권리보장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조례 역시 서울특별시가 제정한 21건의 조례들 중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할 것이다.

나. 내용 분석

1) 법령상 체계정합성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조례는 그 목적에서 밝히듯이 교통약자법에 근거한다. 교통약자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중 ‘저상버스를 도입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제21조(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제27조(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 등을 위임한다. 그리고 특별히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4항7),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제8항8), 제25조(실태조사)제3항9)은 조례에 직접 위임한다. 여기에 대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조례는 제7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제10조(저상버스의 운영),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조례에서 용어 정의가 다소 혼란한 부분이 있다. 조례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제1항은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을 요구하는 교통약자법 제2조제8호10)의 정의와 다소 충돌한다.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은

7)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9) 교통약자 현황 및 이동 실태,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교통약자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특별교통수단의 핵심 구성요소임을 감안할 때, 조례의 문맥상 불필요한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거나, 존치시키려면 정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용어의 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2)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법률과 조례에 따라 도입된 저상버스의 운전자들이 휠체어 사용자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정확하게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아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거나, 탑승 설비 작동법을 잘 몰라 휠체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들이 장애인 이용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자원봉사자 심정으로 일한다는 등 이용자에게 모욕이 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조례는 법률의 입법 배경과 목적에 맞게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운수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국회는 2012년 6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를 개정하여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조항을 대폭 강화하고¹¹⁾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조례는 제7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에 “저상버스 및 버스운전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만 기술할 뿐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조례에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관련 교육뿐 아니라 교통수단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차량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법령에는 없지만 저상버스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조례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조례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곳이다.(동일한 조항을 둔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29곳이다.) 그 중에 경기도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교육) ①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①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4.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 5.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란 표현이 있는데, 이는 “교통약자와 동행하는 자” 또는 “교통약자의 가족 및 동반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은 가족이나 보호자보다 활동보조인이나 친구와 함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장애 당사자들은 함께 다니는 사람을 무턱대고 “보호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의 이미지를 조장하는 용어 대신 “동행인” 개념을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다.

3) 자주성 및 창의성

전국의 교통약자조례 중 서울특별시 조례(2007년 5월)와 대구광역시 조례(2007년 10월)가 가장 빨리 제정되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조례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제정되었고, 타 자치단체 조례의 전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서울특별시 조례는 이동지원센터를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하고(제11조), 특별교통수단을 일 24시간을 운행(제14조)하도록 한 것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정한 원칙이며, 이후 다른 자치단체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에도 이 원칙이 많이 반영되었다.

다만, 서울특별시 조례는 제정 이후 개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창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18회, 시행령은 11회, 시행규칙은 6회 개정되었는데, 서울특별시 조례는 그동안 제16조 요금 관련 개정을 제외하면 타법 개정에 따른 개정과 소소한 문구 수정에 따른 개정만 이루어져 법령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 민주성

교통약자조례는 다수의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규다. 따라서 각급 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정할 때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조례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통약자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는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은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제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는 그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조례 제8조(의견청취 및 공청회)는 “서울특별시장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한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조례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규정이 삭제된 것은 아쉽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제2항12)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2012년 1월5일에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지방교통위원회’에 통폐합한 것이다. 서울특별시뿐 아니라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교통약자조례도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반면, 대구광역시 조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체 교통행정의 맥락에서 교통약자 관련 쟁점을 다룬다는 것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자문기구 통폐합 과정에서 교통약자 당사자의 위원회 참여 배제는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개정 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회의 구성)제3항제3호는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인 이상의 단체활동가”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으로 당연히 참여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13)이 규정하는 지방교통위원회 구성원 중에 교통약자 당사자를 대표하는 자가 없어 위원회가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추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1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구성)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제3조의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대상자 요건/범위의 적정성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조례 제15조제1항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제1호), “제1호 외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제2호),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제3호),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제4호)로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약자법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우선, 서울특별시 조례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다. 또 제2호의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적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제15조제2항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지만, 규칙을 보면 전단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은 기술하고 있지만 후단의 “이용자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제2호의 모호함을 보완하지 못한다.

참고로, 6대 광역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표 8>과 같다.

구분	이용대상자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으로서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가족 및 보호자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중복장애가 있는 뇌전증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으로서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사람 ■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곤란하고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사람 ■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또는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으로서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사람 ■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으로서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사람 ■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또는 2급 및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곤란하여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표 8> 6대 광역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비교

위 표에서 보듯이 6대 광역시 조례는 모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정한 핵심 대상자, 즉 ▲1~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으로서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인정한다. 여기에 더해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임산부(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장애인이나 노인(광주광역시), 일시적 장애인(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자폐성 장애인(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을 이용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경향을 서울특별시 조례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경증 장애인이라 하

더라도 장애의 경중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인’과 특히 ‘임신한 여성장애인’을 이용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한 교통약자조례 13건의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을 조례가 정하고 있는 행정적 지원시스템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9>와 같다.

주요 내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연차별 계획 수립	×	●	●	×	●	×	×	×	×	×	×	×	×
실태조사	×	○	○	×	×	○	×	×	×	×	×	●	×
저상버스 운영	●	●	●	●	●	●	●	●	●	●	●	●	●
이동지원센터 운영	●	○	●	●	●	●	○	○	○	●	○	○	○
특별교통수단 운영	●	●	●	●	●	●	●	●	●	●	●	●	●
사업자/운전자 교육	×	×	●	×	×	●	×	●	●	×	●	●	×
이동편의위원회	△	×	●	×	△	△	×	×	×	△	△	×	×
시정조치	×	×	×	×	×	×	×	●	○	×	○	○	●
예산 지원	○	○	○	○	○	○	○	●	○	○	○	○	○
규칙/규정 유무	●	×	●	●	●	×	●	○	○	○	○	○	●

* 참고: 위 표에서 ●는 “강행규정”, ○는 “임의규정”, ×는 “규정 없음”, 그리고 △는 이동편의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지만 다른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나타냄. 단, ‘규칙/규정 유무’에서는 ●는 시행규칙이 제정된 경우, ○는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지도 않고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표 9> 자치단체별 교통약자조례 비교

전반적으로 볼 때, 11개 지표 중 서울특별시 조례에 반영된 것은 6개 정도다. 서울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위 표에서 보다시피 조례의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수준은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교통약자법 제25조가 조례에 위임한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서울특별시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5조(실태조사 등)는 도지사는 “시·군의 전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되, 성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여 구분 조사하여야 하고 개선

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5곳 광역자치단체 조례는 교통약자법 제29조(시정명령)¹⁴⁾에 근거하여 저상버스 운행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취한다는 규정한다.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강행규정이고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조례는 임의규정이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7)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교통약자법 제14조제4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저상버스 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조례 제9조제3항은 “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서울특별시 조례 제17조(예산의 확보)는 “서울특별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의 재정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참고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재정지원)는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규정한다.

다. 소결 및 제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조례는 교통약자법에 따른 전국 최초 조례지만, 그동안 변화된 법률 및 개정에 의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제정 당시 포함되었던 이동편의위원회 관련 규정이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고,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교통사업자,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방법과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조례의 구성과 기술이 지나칠 정도로 간결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비해 조문의 수가 적어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가 어려워 보인다. 교통약자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경우처럼 조문을 더 늘리고 가능하면 장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보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 제29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제11조를 위반하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가. 일반 사항

1) 조례 개요

제정일	2016. 1. 7	소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근거법	장애인복지법	조례 성격	위임조례
분야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 <input type="checkbox"/> 인권증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편의증진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보장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지원 <input type="checkbox"/> 행정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시설/단체육성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일상생활 및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실태조사 		
제정 현황	17곳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에만 있음		

2) 조례의 취지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이하 “생활·이동지원센터조례”)는 서울특별시에만 있는 독특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 규정과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는 매우 단순한 조례이다. 이 조례에 따라 기존의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나. 내용 분석

1) 법령상 체계정합성

서울특별시 생활·이동지원센터조례는 그 목적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¹⁵⁾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¹⁶⁾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조례 제3조(지원계획 수립)제2항은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5조(보조금 지원 등)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런 점에서 이 조례는 형식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두면서 그 내용은 교통약자이동편의 관련 법률과 서울특별시 조례를 준용하고 있어서 법체계상 다소 혼란을 가져다준다.

특히,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서비스 전달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그 취지와 목적이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특별시 생활·이동지원센터조례가 특정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상 다른 서비스 전달기관과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서울특별시 생활·이동지원센터조례는 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권리와 서비스를 규정하는 조례라기보다 센터 그 자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례여서 특별히 장애인의 권리성과 인권보장성을 논의할 내용이 없다.

3) 자주성 및 창의성

서울특별시 생활·이동지원센터조례는 전국에서 서울특별시에만 있는 독특한 조례이지만, 특정한 장애인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15)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1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이란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민주성

서울특별시 생활·이동지원센터조례에는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고, 더구나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같은 운영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항조차 없어 민주성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없다.

5) 대상자 요건/범위의 적정성

「장애인복지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만 보면, 서울특별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동에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¹⁷⁾를 보면, 현재 생활·이동지원센터는 1~3급 시각장애인과 1~2급 신장장애인¹⁸⁾에 국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 시각장애인이 포함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다른 장애 유형들 중에는 신장장애인만 이용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신장장애인들 중에서도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호흡기장애인, 심장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등 여타 내부장애인도 신장장애인만큼 이동의 제약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조례는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 대상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혼란을 예방하고 장애유형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용자 범위를 조례에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6)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서울특별시 생활·이동지원센터조례는 서울특별시에만 있는 특별한 조례여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없고, 이 연구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문제 삼은만큼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을 논할 실익이 없어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서울특별시 생활·이동지원센터조례 제5조(보조금 지원 등)와 제6조(실태조사)는

17) <http://kbucall.org>. 2016. 9. 27

1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신장장애인의 장애 등급은 2급과 5급뿐인데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신장장애인 1~2급이라고 한 것은 오기(誤記)로 보인다.

센터에 대한 보조금 및 실태조사 비용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소결 및 제언

서울특별시 생활·이동지원센터조례는 이용 대상자를 위한 조례도 아니고 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한 조례도 아니고, 센터 그 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장애관련 조례의 경우, 조례에 따른 권리 주체 또는 서비스 대상자 위주로 구성되는데 이 조례는 서비스 전달기관 그 자체를 지원하는 규정 위주이고 생활·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는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 조례에서는 그 수단이 목적으로 전도되었다. 따라서 조례명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가 아닌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에 센터의 의무·기능·설치 및 운영, 이용 대상자, 센터에 대한 감시·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할 수 있다.

좀 더 장기적인 고려를 한다면, 생활·이동지원센터조례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는 것이다. 물론, 이 방안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와 기관의 합의와 정책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한 토론회에서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남산(2015)은 서울특별시내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423대와 생활이동차량 145대를 통합하여 ‘바우처택시’¹⁹⁾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기존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은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배차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이동차량(‘복지콜’)을 병행 운영하되 경과 기관을 두어 자연 감소시키면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50대의 개인택시를 전면적으로 확대 강화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주장이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수원시는 부분적으로 바우처택시를 도입하여 운행중이다.

19)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중 이동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서울시로부터 일부 지원받아 이용하는 민간택시

3.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일반 사항

1) 조례 개요

제정일	2011. 1. 13	소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근거법	장애인복지법	조례 성격	위임조례
분야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 <input type="checkbox"/> 인권증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편의증진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보장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지원 <input type="checkbox"/> 행정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시설/단체육성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예산 지원 		
제정 현황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전북, 전남 등 광역자치단체 6곳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취지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수화통역센터조례”)는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기관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나. 내용 분석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조례는 「서울특별시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전달기관에 관한 조례다. 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에 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주민복리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다른 서비스 전달기관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

할 때, 이 조례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는다. 특히,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에 서울특별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수화통역센터조례를 그 속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수어통역)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에서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실익을 구하기 어려워 이 조례에 대한 내용 분석을 생략한다. 그 대신, 뒷부분에서 가칭 ‘서울특별시 수화언어 활성화 조례’ 제정 방안을 논의할 때 함께 다루기로 하겠다.

4.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일반 사항

1) 조례 개요

제정일	2016. 1. 7	소관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근거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 유형	위임조례
분야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 <input type="checkbox"/> 인권증진 <input type="checkbox"/> 편의증진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보장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지원 <input type="checkbox"/> 행정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시설/단체육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취약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지원사업 ▪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업무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 		
제정 현황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 7곳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취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발달장애인조례”)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시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조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례와 달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강조한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장애인 복지 및 인권 수준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신체장애인 위주의 발전이었다. 발달장애인들은 아직도 시설화의 주 대상이 되고, 다른 장애 유형보다 사회참여율이 현저하게 낮고 학대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가족과 권익옹호자들은 오랫동안 입법운동을 전개하였고, 마침내

2014년 5월20일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정 장애유형을 위한 법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다.

나. 내용 분석

1) 법령상 체계정합성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제10조(의사소통지원), 제11조(자조단체 활동 지원),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제17조(보호조치),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 제22조(계좌관리 점검),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정책),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조치), 제26조(평생교육 지원), 제27조(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지원), 제28조(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제32조(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제33조(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등이 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와 복지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발달장애인법은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에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특별히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에서 자율선택권, 자기결정권,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규정한다.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조례는 법률이 정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재기재하지 않고, 제4조(시민의 책무)에서 “모든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이념’ 또는 ‘기본원칙’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성과 인권보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자주성 및 창의성

2016년 1월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조례는 비교적 늦게 제정된 조례지만, 앞서 제정된 다른 시도의 조례를 모방하지 않고 법률 기술적 측면에서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법률이 정한 규정과 틀 안에서만 조문이 구성되어 있어서 특별히 자주적이거나 창의적이라고 할 부분을 찾기는 어렵다.

독창성이 돋보이는 조례를 꼽자면, 부산광역시 조례의 경우 <표 10>에서 보다시피 지원사업을 ‘권리보장지원사업’, ‘복지지원사업’,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조례를 이렇게 구성할 경우, 조례 이용자가 복잡한 조례 내용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문	지원 내용
제6조(권리보장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 의사소통지원 사업 ■ 자조단체 결성지원 사업 ■ 보호조치지원 사업
제7조(복지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제8조(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표 10>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조례 제6~제8조

4) 민주성

서울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조례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조례는 전무하다. 이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조례에 의견청취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 원칙을 실현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

과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을 둬으로써 시민의 대표가 계획 추진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잘 부합한다.

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조례에 부산광역시와 경기도의 조례처럼 ‘발달장애인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그 가족,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할 수행한다.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과 사업의 복잡성과 특이성을 감안하면 장애인복지위원회와 별도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참고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장을 만들어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상세하게 규정한다.

제3장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제7조(설치)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의원
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의한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경기도 조례가 규정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의 주요 사업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부분이 배제되었다는 점은 아쉽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간다운 삶을 실현

하려면 서비스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인식개선과 편견 해소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서울특별시의회가 발달장애인조례에 위원회 규정을 신설한다면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보다 ‘발달장애인권리보장위원회’로 명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5) 대상자 요건/범위의 적정성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조례는 그 대상자를 발달장애인으로 특정하고 있어서 대상자 요건이나 범위에 대해 특별히 논할 내용이 없다.

6)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한 발달장애인조례 7건의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을 조례가 정하고 있는 행정적 지원시스템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11>과 같다.

주요 내용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제주
기본계획	●	●	×	×	●	×	●
시행계획	●	●	×	×	●	×	●
실태조사	×	×	●	×	×	×	●
평생교육센터 지원	○	×	×	×	×	×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	●	×	●	●	●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센터 운영	×	×	○	×	×	×	×
위기발달장애인쉼터운영	×	×	●	×	○	×	×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운영	×	●	○	×	●	○	×
협력체계 구축	●	●	×	●	●	●	●
규칙/규정 유무	×	×	×	×	×	×	×
예산 지원	○	○	○	×	○	○	○

* 참고: 위 표에서 ●는 “강행규정”, ○는 “임의규정”, 그리고 ×는 “규정 없음”을 나타냄.(단, ‘규칙/규정 유무’에서는 ●는 시행규칙이 제정된 경우, ○는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지도 않고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표 11> 자치단체별 발달장애인조례 비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조례 제6조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7항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만 규정하고 있어 실태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반면,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 제4조(실태 조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를 별도로 항목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육 및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복지 지원 및 이용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한편,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 제17조(전환서비스 지원)는 법령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다음과 같이 자율적으로 ‘발달장애인 전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①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거주시설 입소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전환서비스의 체계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입소부터 퇴소,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하는 통합적(ONE-STOP)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 모델 개발
2. 발달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운영
3. 발달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전환계획 수립 및 연계, 지원 등 의 체계 구축
4. 발달장애인 거주 및 이용 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5. 그 밖에 발달 장애인의 전환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발달장애인 전환서비스(transition service)는 발달장애인이 학교나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평생교육, 성인 서비스, 취업활동 등을 위한 서비스

를 말한다.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전환서비스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광주광역시 조례는 의미가 크다. 다만,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거주시설 입소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전환서비스 제공한다고 규정하는데, 거주시설 입소는 사실상 역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조례는 ‘발달장애인전환지원센터’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거주시설 입소 지원”은 그 기능에서 배제해야 마땅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발달장애인전환지원센터를 설립 할 경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별도 조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광주특별시 발달장애인조례가 전환지원센터의 기능을 강조한다면, 서울특별시 조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달리 발달장애인법 제26조(평생교육 지원)를 근거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관한 규정을 제8조(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와 제9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에 덧붙여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7)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조례 제7조(지원사업)제2항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절차와 방법을 명시한다.

다. 소결 및 제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조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관심을 많이 둔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더해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다른 자치단체 조례들처럼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 아울러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이념’ 또는 ‘기본원칙’을 조례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5.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가. 일반 사항

1) 조례 개요

제정일	2005. 7. 21	소관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근거법	장애인복지법	조례 유형	위임조례
분야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 <input type="checkbox"/> 인권증진 <input type="checkbox"/> 편의증진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보장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정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시설/단체육성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기능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 임기, 위촉 해제 ▪ 회의, 소위원회 ▪ 회의 수당 		
제정 현황	광역시자치단체 17곳 모두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취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이하 “장애인위원회조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 관련 최고 심의 및 자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및 역할, 회의 등을 규정하는 조례이다. 이 조례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계획, 시행, 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고, 장애 당사자들이 위원회에 다수자로 참여하여 발언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나. 내용 분석

1) 법령상 체계정합성

서울특별시 장애인위원회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가 조례에 위임한 사무를

규정한 조례이다.

2)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장애인에 관한 권리나 서비스가 아니라 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여서 특별히 분석할 사항이 없다.

3) 자주성 및 창의성

장애인위원회 조례는 표준조례에 의해 제정된 탓에 전국 대부분 조례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조례 역시 표준조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서울특별시 조례 제2조(기능)는 장애인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복지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국한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²⁰⁾를 재기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기능)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와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규정에 관한 사항
5.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7.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그리고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기능)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6.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경우처럼 서울특별시 조례도 장애인위원회 기능과 심의 내용을 더 폭넓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민주성

서울특별시 장애인위원회조례 제3조(구성)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본부장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에 규정된 사항이지만, 부위원장을 복지본부장이 단독으로 맡는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서울특별시의 특이한 규정이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그 성격상 민과 관의 거버넌스가 잘 작동해야 하는 곳인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관에서 맡는다는 것은 민주적 원칙에 어긋리지 않는다. 부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 호선으로 결정하거나 민과 관이 1명씩 해서 2명을 두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조례를 통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만큼 위원의 구성은 이 조례의 본질적 사안에 해당된다. 위원의 선임 방식, 임기 및 연임 제한, 성별 고려 등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민주성을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조례와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서로 비교하면 <표 12>와 같다.

	부위원장	위원 임기 및 연임	성별 고려	비고
서울	복지본부장 당연직	3년 임기, 연임 제한 없음	없음	
부산	위원 중 호선	3년 임기, 2회 연임 가능	없음	
대구	위원 중 호선	3년 임기, 연임 제한 없음	없음	
대전	위원 중 호선	3년, 연임 규정 없음	없음	
울산	위원 중 호선	2년 임기, 연임 제한 없음	있음	
경기	위원 중 호선	2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없음	
강원	위원 중 호선	2년 임기, 연임 제한 없음	없음	
충남	위원 중 호선	3년 임기, 연임 제한 없음	있음	위원장: 담당국장
전남	위원 중 호선	2년 임기, 1차 연임 가능	없음	

경북	위원 중 호선	2년 임기, 연임 제한 없음	없음	
경남	위원장 지명	2년 임기, 연임 제한 없음	없음	
제주	위원 중 호선	3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있음	부위원장 2인 중 1인은 장애인

* 인천, 광주, 울산, 충북, 전북은 대구와 동일한 형태를 취함.

<표 12> 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비교

위 표에서 보듯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정 공무원을 당연직 또는 임명직 부위원장으로 두는 경우는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가 유일하다.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임기는 2~3년 중 적절하게 선택하면 될 것이지만 연임 제한 규정은 두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울산광역시²¹⁾, 충청남도²²⁾, 제주특별자치도²³⁾ 조례의 경우 위원들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조례의 민주성과 성인지적 관점이 돋보인다.

이상에서 비교해 본 결과, 서울특별시의회는 위원의 임기와 연임을 적절하게 제한하고 공무원의 당연직 부위원장 임명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위원회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 위원을 구성할 때 다른 자치단체처럼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고, 여기에 더해 장애유형까지 고려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담으면 선도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

5) 대상자 요건/범위의 적정성

장애인에 관한 권리나 서비스가 아니라 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여서 특별히 분석할 사항이 없다.

6)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21)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22)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2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4조(구성) ④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性)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대도시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한 장애인위원회조례 7건의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을 조례가 정하고 있는 행정적 지원시스템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13>과 같다.

주요 내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위원회 설치	○	○	×	○	○	○	○	○
위원 수당 지급	○	○	○	○	○	○	○	○
외부 협조요청	○	○	○	○	○	○	○	○
규칙/규정 유무	○	○	○	○	○	○	○	○

* 참고: 위 표에서 ●는 “강행규정”, ○는 “임의규정”, 그리고 ×는 “규정 없음”을 나타냄.(단, ‘규칙/규정 유무’에서는 ●는 시행규칙이 제정된 경우, ○는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지도 않고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표 13> 자치단체별 장애인위원회조례 비교

위 표에서 보듯이, 4가지 지표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위원회 조례와 타 시도 조례를 비교해 보았으나 모든 자치단체가 표준조례에 의해 제정되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7)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장애인에 관한 권리나 서비스가 아니라 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여서 특별히 분석할 사항이 없다.

다. 소결 및 제언

서울특별시 장애인위원회 조례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그리고 표준조례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이어서 다른 자치단체들의 경우도 그렇지만 자주성과 창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서울특별시 조례는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맡는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처럼 여성(장애인) 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민주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도 사례를 찾기 어렵지만 서울특별시 조례가 선도적으로 위원 구성에서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6.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가. 일반 사항

1) 조례 개요

제정일	2015. 5. 14	소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근거법	없음	조례 성격	자치조례
분야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 <input type="checkbox"/> 인권증진 <input type="checkbox"/> 편의증진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보장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지원 <input type="checkbox"/> 행정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시설/단체육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취약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 실태조사 ▪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제정 현황	서울, 대전, 경기, 충남, 전북 등 광역자치단체 5곳에서 제정되었음(장애인 가정 출산지원 조례 포함)		

2) 조례의 취지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이하 “출산지원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이 임신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자녀가 장애를 가질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13.8%),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11.9%)가 뒤를 이었다. 또한 2012년 1월부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 되어 시행되고는 있으나 출산 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여성장애인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다(베이비뉴스 2015. 6. 31.). 그래서 한국여성장애인단체연합 같은 민간단체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장애인에게 최

대 100만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 출산 지원조례는 이와 같은 여성장애인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나. 내용 분석

1) 법령상 체계정합성

서울특별시 출산지원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정한 자치조례이다.

2)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서울특별시 출산지원조례는 다소 형식적이지만 제4조(차별금지)에서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성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다.

3) 자주성 및 창의성

현재 출산양육지원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5곳이다. 전라북도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구성은 단체장의 책무, 계획수립, 실태조사, 사업지원 등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도 비슷하다. 특히, 2015년 7월 3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조례는 2012년 6월 15일 제정된 대전광역시 조례와 완전히 일치한다. 수도 서울과 대전의 특성과 위상이 다름에도 법규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자치법규 제정 시 자주성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현재 서울특별시는 관내 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출산한 장애여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홈헬퍼(home helper)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되고 있어 서울특별시 출산양육지원조례에 관련 내용을 담아 제도화함으로써 조례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4) 민주성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양육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 해당 당사자의 참여 및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는 출산지원조례는 서울특별시뿐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례에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서울특별시 출산

지원조례가 먼저 의견청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5) 대상자 요건/범위의 적정성

출산지원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 5곳 가운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조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조례이고 전라북도 조례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조례다. 대상자 요건과 범위의 측면에서 볼 때,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조례는 그 대상 산모인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이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조례는 산모뿐 아니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일 때도 지원을 한다는 의미다. 오늘날 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자녀 양육의 책임이 부모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조례 역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모뿐 아니라 부에까지 확대하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조례는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지원금 관련 조항이 없는데 반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전라북도 조례 제3조(지원대상)는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정해 놓고 있다.

- ①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 ②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자 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 출산지원조례 제3조(지원대상)은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 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2.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본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도 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를 직접 양육하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순위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지만, 경기도 고양시 출산지원조례는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우선, ‘여성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미혼모 또는 한부모가족이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특히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에 따른 해산급여 대상자,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이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액) ① 고양시장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대상자,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1월부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회 또한 조례 명칭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출산지원금 지원을 골자로 현행 출산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한 출산양육조례 5건의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을 조례가 정하고 있는 행정적 지원시스템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14>와 같다.

주요 내용	서울	대전	경기	충남	전북
계획 수립	●	●	●	×	×
실태조사	○	○	○	×	×
임신, 출산, 양육 사업	○	○	○	×	×
출산지원금 지원	×	×	×	○	●
양육지원금 지원	×	×	×	○	×
비밀의 유지	×	×	●	×	×
환수 조치	×	×	×	○	○
예산 지원	○	×	○	○	○
규칙/규정 유무	○	×	○	○	○

* 참고 : 위 표에서 ●는 “강행규정”, ○는 “임의규정”, 그리고 ×는 “규정 없음”을 나타냄.(단, ‘규칙/규정 유무’에서는 ●는 시행규칙정이 제정된 경우, ○는 조례에 규칙/규정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는 규칙/규정이 제정되지도 않고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표 14> 자치단체별 출산양육조례 비교

한때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급증하던 출산지원조례가 최근 전국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여성장애인(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이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통합 폐합 정책의 대상이 되면서 조례가 폐지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아직 5곳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출산지원금 제공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는 충청남도과 전라북도 조례뿐이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의 조례는 출산지원금 지원 규정 대신 임신·출산·양육 사업 지원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두 유형의 조례는 그 목적과 취지는 비슷하지만 조례의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특별시 출산지원조례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유일한 조례인 만큼 출산지원비 지급, 의견청취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산후도우미 제공²⁴⁾, 활동보조인 파견²⁵⁾ 같은 조항

24)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25)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을 포함하는 등 대폭적인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7)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서울특별시 출산지원조례에는 별도의 재원조달 방식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경우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출산지원금 지원 조항이 있는 전라북도 조례²⁶⁾와 충청남도 조례²⁷⁾의 경우 지원방법과 재원조달 방식을 명시해 두고 있다.

다. 소결 및 제언

서울특별시 출산지원조례는 대전광역시 조례를 그대로 모방하다보니 출산지원금 지원 규정이 없고, 적용 범위가 장애인가정이 아니라 여성장애인으로 한정되고, 여성장애인이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등 전체적으로 미비한 조례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의 위상에 맞게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전반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조례를 다른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보다 더욱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하자면, ‘장애여성의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장애여성)는 장애여성이 다중차별이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여성의 완전한 발전과 권한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또 「장애인복지법」은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국내외 규범이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는 장애여성의 포괄적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26)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5조(지원방법) 도지사는 출산지원금을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7)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4조(지원방법) ①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마다, 양육지원금은 분기별로 1명마다 지급 한다. ②도지사는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7.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

가. 일반 사항

1) 조례 개요

제정일	2016. 1. 7	소관부서	인사과
근거법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조례 성격	위임조례
분야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 <input type="checkbox"/> 인권증진 <input type="checkbox"/> 편의증진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보장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정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시설/단체육성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원칙 ▪ 교육훈련 ▪ 근무환경 개선 ▪ 지원범위 		
제정 현황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등 광역자치단체 6곳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취지

2015년 5월 18일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점차 증가하는 장애인공무원의 업무 능률을 증진하고, 공직사회가 장애인 통합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개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이하 “장애인공무원조례”)가 제정되었다.

장애인공무원조례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6곳에서 제정되었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다. 또 조례명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는 ‘장애인공무원지원조례’라 하고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장애인공무

원편의지원조례’라고 한다.

나. 내용 분석

1) 법령상 체계정합성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조례로 위임한 사무를 규정한 조례이다. 다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에 대한 정의가 법률과 조례 모두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점을 보인다.

우선,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조례 제2조(정의)제2호는 “근로지원인”을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 정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정의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제2항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근로지원인”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8조(지원범위)는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증 장애인공무원으로 국한하고 있어서 조례 시행상 혼란은 없겠으나 “근로지원인”에 대한 규정이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으로 정의한다. 이에 반해, 「장애인복지법」 제65조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규정한다. 또 2016년 12월 30일 시행을 앞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는 “보조기기”를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같은 용어 문제는 조례의 문제라기보다 상위법령상의 혼란 때문에 초래된 것이지만 서울특별시 조례가 적절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장애인공무원”과 “중증장애인공무원” 정의의 근거를 「장애인복지법」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두고 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조례의 경우 “근로지원인”을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2)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조례 제3조(기본원칙)는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며 장애인공무원의 권리를 선언한다.

3) 자주성 및 창의성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조례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먼저 제정되었다.(2016년 1월 7일 제정) 서울특별시 조례는 앞서 제기했듯이 다소 혼란은 있지만 제2조에서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를 정의하였다. 또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는 장애인공무원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와 업무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조항들은 이후 제정된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전형이 되고 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그대로 모방하였다.

4) 민주성

장애인공무원조례에는 위원회나 계획수립 조항이 없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서 주민참여 등 민주성을 평가할만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

5) 대상자 요건/범위의 적정성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조례는 중증 장애인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을, 장애인공무원에게는 보조기기와 이동편의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의 대상자 요건과 범위도 서울특별시와 다르지 않다.

6)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한 장애인공무원조례 6건의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을 조례가 정하고 있는 행정적 지원시스템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15>와 같다.

주요 내용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장애인공무원 우대정책 실시	●	●	●	×	×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	●	×	×	×	×
교육훈련 지원	●	●	×	×	×	×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	●	○	○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지원	●	●	○	○	●	○
이동편의 시설 설치 및 보강	●	●	○	○	●	○
전문기관 지정	●	●	●	○	○	●
예산 지원	○	○	○	○	○	○
규칙/규정 유무	×	×	×	×	×	×

* 참고 : 위 표에서 ●는 “강행규정”, ○는 “임의규정”, 그리고 ×는 “규정 없음”을 나타냄.(단, ‘규칙/규정 유무’에서는 ●는 규칙/규정이 제정된 경우, ○는 조례에 규칙/규정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 ×는 규칙/규정이 제정되지도 않고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표 15> 자치단체별 장애인공무원조례 비교

장애공무원조례는 근로지원인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동편의 시설 설치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조례가 핵심 부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 표에서 보듯이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조례의 경우 장애인공무원 우대정책,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훈련 지원 관련 조항이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장애인공무원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들은 전문기관에 출연금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소결 및 제언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조례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먼저 제정되었으나 다른 자치단체 조례와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는 조항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서울특별시 조례 제3조에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또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으나 이는 조례의 문제라기보다 상위법령이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다.

8.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가. 일반 사항

1) 조례 개요

제정일	2011. 1. 13	소관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근거법	장애인복지법	조례 성격	위임조례
분야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 <input type="checkbox"/> 인권증진 <input type="checkbox"/> 편의증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립생활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보장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지원 <input type="checkbox"/> 행정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시설/단체육성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생활지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추가지급 ▪ 지역사회 전환 지원(탈시설,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제정 현황	서울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16곳에서 제정되었음(경남 제외)		

2) 조례의 취지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2007년 특별히 제4장(자립생활지원)을 신설하여 자립생활이 장애인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의 취지를 살려 전국 대부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이하 “자립생활조례”)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이 조례는 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서비스, 체험홈 등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사회 참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나. 내용 분석

1) 법령상 체계정합성

서울특별시 자립생활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의 단체위임사무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법률의 명시적 위임은 없으나 조례 제5장(지역사회전환)과 제6장(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과 중증장애 당사자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주민복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가 일부 있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14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제1항에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란 표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은 2011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거주시설”²⁸⁾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변경하고, 아울러 조례 제15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란 표현을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 바꾸어야 용어상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

또 서울특별시 자립생활조례 제2조제3호는 “활동지원급여”라 함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고 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고 했다. 제3호에서 “법”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했다면 제4호에서 말하는 “법”도 동일한 법률이어야 하는데, 제4호에서 말하는 “법 제54조”은 「장애인복지법」의 조항이다. 그리고 조례 제12조에서 말하는 “법 제6조”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명백한 오기라고 할 수 있으며, 조속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혼란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서울특별시 자립생활조례는 그 자체로 중증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기본이념’ 또는 ‘기본원칙’을 추가하여 권리성과 인권보장성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3) 자주성 및 창의성

28) 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자립생활조례는 2011년 1월 13일에 제정되었는데, 부산광역시(2009년), 인천광역시(2008년), 광주광역시(2006년), 대전광역시(2009년), 경기도(2009년), 강원도(2008년), 충청남도(2007), 경상북도(2008년), 제주(2009년)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보다 상당히 늦게 제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사회전환 서비스’,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의무’, ‘시설 퇴소자 지원’ ‘주거생활 지원’,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자립생활가정 제공’ 같은 혁신적인 조항을 선도하였다는 점에서 자주성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최근해야 이 같은 조항들을 자립생활조례에 추가하고 있다.

4) 민주성

서울특별시 자립생활조례 제5조(계획의 수립)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견수렴의 절차나 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술은 없다. 아울러 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을 둬으로써 시민의 대표가 계획 추진 과정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5) 대상자 요건/범위의 적정성

자립생활은 원래 전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따라서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유형을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하지만 사실상 자립생활은 신체적 장애인 중심으로 발전한 개념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가 분출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전부터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운동인 자기권리주장운동(피플퍼스트운동)이 몇 해 전부터 시작되었고, 정신장애인들도 자립생활운동에 돌입하여 2016년에 서울특별시에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문을 열었다.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별히 장애유형별 자립생활을 구분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자립생활조례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구광역시 자립생활조례 제6조는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장애정도, 장애유형, 성별에 따른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또 대전광역시 조례 제5조(자립생활 지원)는 자폐성장아인지원센터 사업,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사업,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업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울특별시 조례에도 특별히 정신적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6)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대도시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한 장애인공무원조례 8건의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을 조례가 정하고 있는 행정적 지원시스템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16>과 같다.

주요 내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원계획 수립	●	●	●	●	●	●	●	●
실태조사	●	○	○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	○	○	○	○	○	○	○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	○	●	×	○	×	○	○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	×	×	●	●	×	×	●
시설퇴소자 지원(정착금)	●	○	●	●	○	×	○	×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	×	●	●	×	×	○	○
자립생활가정 운영	●	×	●	×	×	×	×	×
공공임대주택(자립주택)	○	○	×	●	×	×	●	×
보장구수리 및 부품지원	×	×	○	×	×	×	×	×
직업훈련 및 구직 연계	×	×	○	●	○	×	×	○
출산 및 육아서비스	×	×	○	●	×	○	○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업	×	×	×	×	×	○	×	×
여성장애인자립센터사업	×	×	×	×	×	○	×	×
예산 지원	○	○	○	●	○	○	○	●
규칙/규정 유무	○	○	○	○	○	×	○	○

* 참고 : 위 표에서 ●는 “강행규정”, ○는 “임의규정”, 그리고 ×는 “규정 없음”을 나타냄.(단, ‘규칙/규정 유무’에서는 ●는 규칙/규정이 제정된 경우, ○는 조례에 규칙/규정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는 규칙/규정이 제정되지도 않고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표 16> 자치단체별(대도시) 자립생활조례 비교

자립생활조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조례의 세부사항을 규칙에 담아 자치법규를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자립생활조례는 제5조(계획이 수립)에서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 제6조에서 센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에서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14조에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 제18조에서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으로 정한다고 하고, 제19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재확인한다. 이처럼 조례에서 규칙 제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여러 차례 기술하면서도 조례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지적되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중 아직 자립생활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곳은 없으나 서울특별시가 선제적으로 규칙을 제정하여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장애관련 자치법규 중 자치단체에 따라 규율 내용이 가장 다양한 것이 자립생활조례다. 대개 장애관련 조례들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율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그 내용이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각 자치단체의 자립생활조례는 제2조(정의)부분만 빼면 동일한 내용이 별로 없다. 이는 자립생활이 그만큼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특정 지역의 자립생활운동과 그 자치단체가 자립생활 정책과 서비스를 둘러싸고 다양한 방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특별시가 향후 자립생활조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참고할만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경기도 조례 제13조(자립생활체험홈)에는 “자립생활체험홈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4명을 넘을 수 없고,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며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경상북도 조례 제9조(생활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왔거나, 시설을 나오하고자 하는 욕구가 파악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할 수 하고 “긴급을 요하는 시설 퇴소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임시 주거지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며 적극적인 탈시설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1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는 자립생활센터 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세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부산광역시 조례는 제5조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이와 더불어 제6조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한다.

인천광역시 조례 제6조에는 다소 형식적인 규정이지만 ‘자립생활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전라남도 조례 제9조(운영기준 등)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제10조(시설기준)은 자립생활센터의 시설기준을 규정한다.

7)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서울특별시 자립생활조례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는다.

다. 소결 및 제언

서울특별시 자립생활조례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실효성과 선도성이 돋보이는 조례이다. 특히, ‘지역사회전환 서비스’, ‘시설퇴소자 지원’ ‘주거생활 지원’,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자립생활가정 제공’ 같은 혁신적인 탈시설 관련 조항들은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 조례는 정신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조례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는 시행규칙의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제2조와 관련된 오기 부분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제2조제3호 “‘활동지원급여’라 함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를 “‘활동지원급여’라 함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로, 제4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로, 그리고 제12조제1항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6조에 따라 ...”를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로 각각 변경하여야 혼란이 없다.

여기에 더해, 자립생활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자립생활에 관한 ‘기본이념’ 또는 ‘기본원칙’을 추가하여 권리성과 인권보장성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을 덧붙여 시민의 대표들이 추진 과정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가. 일반 사항

1) 조례 개요

제정일	2013. 8. 1	소관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근거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조례 성격	위임조례
분야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 <input type="checkbox"/> 인권증진 <input type="checkbox"/> 편의증진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안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보장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지원 <input type="checkbox"/> 행정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시설/단체육성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 구매 협조요청 		
제정 현황	서울을 비롯한 15곳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되었음(대구, 충북 제외)		

2) 조례의 취지

2015년 처음으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법정 비율 1%를 넘어 1.02%(4,640억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를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 공기업 포함)’,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공기업 등’으로 나눠 살펴보면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이 각각 1.10%, 1.15%로 평균 구매율인 1.02%를 상회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각각 0.80%와 0.89%로 법정 비율에 미치지 못했다.²⁹⁾ 이 같은 현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구매대상 기관 및 대상품목을 정하고 생산, 유통, 판매 지원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우선구매조례”)의 적극적인 시행이 요구된다.

나. 내용 분석

29) 에이블뉴스 2016.06.10.

1) 법령상 체계정합성

서울특별시 우선구매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다.³⁰⁾ 다만, 서울특별시 조례의 명칭에는 “장애인생산품”이라 하고 상위법률의 명칭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 한정한다. 조례 내용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명칭의 차이로 빚어지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현행 「정신보건법」이 2016년 5월2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추가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조례에 반영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³¹⁾ 그런데 서울특별시 조례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우선구매계획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다.³²⁾ 이 조항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례 중에 우선구매계획을 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2)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된 조례여서 권리성에 대해 특별히 분석할 사항이 없다.

3) 자주성 및 창의성

30) 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31)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서울특별시 조례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우선구매조례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특별히 자주적이거나 창의적인 조항을 발견할 수 없다.

4) 민주성

서울특별시 우선구매조례 제6조는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청취나 참여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

5) 대상자 요건/범위의 적정성

서울특별시 우선구매조례가 규정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대상물품의 범위는 법률에 의해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특별히 상세하게 논의할 내용이 없고, 다른 자치단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6)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대도시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한 우선구매조례 7건의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을 조례가 정하고 있는 행정적 지원시스템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17>과 같다.

주요 내용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시책(계획) 수립	●	●	●	○	●	●	●
이행계획	●	●	●	●	●	●	●
우선구매 의무	●	○	○	○	●	○	●
생산·유통 판매지원	○	×	○	●	○	○	○
구매 협조 요청	○	○	○	○	○	×	○
시정조치	×	×	○	○	×	×	×
예산 지원	○	○	○	○	×	○	○
규칙/규정 유무	○	×	×	○	×	○	○

* 참고 : 위 표에서 ●는 “강행규정”, ○는 “임의규정”, 그리고 ×는 “규정 없음”을 나타냄.(단, ‘규칙/규정 유무’에서는 ●는 규칙/규정이 제정된 경우, ○는 조례에 규칙/규정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는 규칙/규정이 제정되지도 않고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표 17> 자치단체별(대도시) 우선구매조례 비교

서울특별시 우선구매조례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제3항은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율을 시행령과 동일한 수준인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규정을 재기재한 수준이다. 다만,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4항은 산하 공공기관 평가를 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구매촉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7)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서울특별시 조례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 소결 및 제언

서울특별시 우선구매조례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재활훈련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추가되었으므로 이 내용을 조례 반영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상위법령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서울특별시 조례는 기관장이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 조항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생산시설 관계자들이 이른바 ‘더블카운팅’ 때문에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뿐 아니라 친환경, 여성기업인, 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한 제품도 별도의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율이 정해져 있는 까닭에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2~3가지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제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불만이다. 이 같은 현실은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종사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블카운팅’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10.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가. 일반 사항

1) 조례 개요

제정일	2011. 1. 13	소관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근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조례 성격	위임조례
분야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증진 <input type="checkbox"/> 편의증진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보장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지원 <input type="checkbox"/> 행정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시설/단체육성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장애인인권증진센터 설치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설치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정 현황	서울 등 광역자치단체 14곳에서 제정되었음(울산, 충북, 경남 외)		

2) 조례의 취지

우리나라 장애관련 법률 19건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회가 비준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만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이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장애인인권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의 대표적인 인권조례다. 서울특별시는 장애인인권조례뿐 아니라 인권기본조례, 아동·청소년인권조례도 있지만 그 중 장애인인권조례가 내용 측면에서 가장 내실이 있고 실효성이 높은 조례라 할 것이다. 장애인인권조례는 장애관련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 조례와 달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고 존엄성을 가진 보통의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차별을 금지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이다.

나. 내용 분석

1) 법령상 체계정합성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특별히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저촉한 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서울특별시 조례와 상위법률의 목적이 차별성이 없어 법률과 조례의 제정 목적과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서울특별시 조례 제1조는 그 목적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의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는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일부 축소하여 재기재한 수준이다. 법령과 자치법규는 규율의 범위, 대상자,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조례는 상위법률의 ‘실효적 이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목적을 기재하였다.

아울러 장애인인권조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본원칙 또는 기본이념 조항을 조례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3조는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등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하여 집행부가 이 조례를 시행할 때 방향성과 초점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3조는 장애인공무원이나 장애의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2015년 6월 22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신고 체계의 구축·운영,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장애인학대와 관련된 새로운 조례를 입법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인권증진조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조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제2항은 시행계획 세부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 특별히 “장애여성, 장애아동을 위한 세부 시책”을 포함하였다. 이 조항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이 겪을 수 있는 이중의 차별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적절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조항에 ‘정신적 장애인’도 함께 포함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4와 제36조는 각각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다. 그리고 제3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이 특별히 심한 차별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조례 제6조제2항에 장애여성, 장애아동뿐 아니라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인권증진조례는 여성장애인, 장애아동뿐 아니라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3) 자주성 및 창의성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조례(2011. 1. 13. 제정)는 전라남도 장애인인권조례(2010. 5. 13. 제정)에 이어 광역자치단체로서는 두 번째로 제정되었지만, 시행규칙이 있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조례 제2조(정의)는 “장애인 인권증진”을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정의한 것도 신선하다. 국내 자치단체들 대부분은 장애인 인권의 근거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국한하는데 반해, 서울특별시 조례는 국내 법규 뿐 아니라 국제조약, 관습법, 선언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인권을 정의한다. 국회가 비준한 국제 조약과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서울특별시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같은 국제 조약을 조례에 반영한 것은 창의적이고 진보적이다. 또 서울특별시 조례의 명칭이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인데,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인권증진)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점도 특이하다.

또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조례 제11조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

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인권 침해 신고에 대한 보상 규정을 서울특별시 조례가 유일하며, 다른 자치단체 조례의 경우 장애인 인권보장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등에게 포상이나 표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경미한 용어 문제 하나를 지적하자면 서울특별시 조례 제2조의 “유엔 장애인인권선언”은 “유엔 장애인권리선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75년 12월 9일 유엔 총회는 결의문을 통해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국내에서는 「장애인권리선언」으로 번역한다. “장애인인권선언”이라고 해도 의미상 큰 차이는 없지만 정확한 표현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4) 민주성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례의 중요도를 생각할 때 ‘기본계획 수립절차’ 조항을 별도로 두고 거기에 구체적인 의견수렴 및 계획 공개 방식 등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7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①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조례 제10조제5항은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위촉위원의 범위를 시의회 의원, 장애인복지 분야 대학교수,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자, 장애인인권단체 대표, 법조인,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할 뿐, 발달장애인 부모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촉 위원 규정을 참고할 만 하다. 경상북도 조례 제10조(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제3항은 위촉 위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장애인 및 여성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한다.

1. 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장애인, 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관련 전문가
5.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및 권리구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끝으로,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인권증진조례처럼 중요한 조례의 경우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감시와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

5) 대상자 요건/범위의 적정성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인권조례여서 특별히 대상자 요건이나 범위의 적정성을 논할 내용이 없다.

6)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한 장애인인권조례 14건의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을 조례가 정하고 있는 행정적 지원시스템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18>과 같다.

주요 내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기본계획	●	●	●	●	●	●	●	●	●	●	●	●	●	●
인권센터	○	○	×	○	○	○	×	●	×	○	●	●	○	×
인권 홍보	●	●	●	●	●	●	●	●	●	●	●	●	●	●
인권 교육	●	●	●	○	○	●	●	●	○	●	○	●	○	●
정책개발	×	×	●	●	●	×	×	●	×	×	●	●	×	●
실태조사	×	●	●	●	●	●	○	●	●	●	●	●	●	●
인권증진 위원회	○	●	●	●	●	●	●	●	●	●	●	●	●	●
신고보상, 포상, 표창	●	○	×	×	○	×	×	×	×	○	×	×	○	×
예산 지원	×	×	×	×	○	○	○	×	×	×	×	×	○	●
규칙 여부	●	×	×	×	×	×	×	×	×	×	×	×	×	×

* 참고: 위 표에서 ●는 “강행규정”, ○는 “임의규정”, 그리고 ×는 “규정 없음”을 나타냄. 단, ‘규칙/규정 유무’에서는 ●는 시행규칙이 제정된 경우, ○는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지도 않고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표 18> 자치단체별 장애인인권조례 비교

14곳 광역 자치단체의 장애인인권조례는 ‘기본계획’, ‘인권센터’, ‘인권 홍보’, ‘인권 교육’, ‘정책개발’, ‘실태조사’, ‘인권증진위원회’, ‘신고보상, 포상, 표창’,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조항은 서울을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에 공동으로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인권조례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있는 곳은 서울 등 10곳이다. 하지만 대구, 강원, 제주, 세종은 장애인 인권 조례를 제정했지만 인권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한편, 서울특별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처럼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분리 등 임시보호를 위한 필요한 서비스 연계 지원”(대구, 경상북도 조례 등),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이행사항 모니터링”(경기도 조례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 해당 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규정한 ‘인권 홍보’ 및 ‘인권 교육’ 조항은 모든 자치단체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조항은 서울을 7곳 자치단체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조항은 대부분 자치단체의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조례에만 누락되어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권증진위원회’ 또는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모든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른 자치단체는 이 조항을 모두 강행규정인데 서울특별시 조례만 예외적으로 임의규정이다.

7)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그리고 장애인 인권 조례를 위한 ‘예산 지원’이 명시적 조항으로 포함된 조례는 광주, 대전, 제주, 세종 등 4건이다.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예산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또 장애인 인증증진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이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대구, 경기 경북 장애인인권조례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시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강행규정까지 두고 있다.³³⁾ 그런데 유독 서울특별시 조례에만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다. 소결 및 제언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조례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비교적 체계적이고 규율 내용이나 범위도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다. 다만,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 발달장애 당사자 또는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차별을 받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세부시책을 추가하고, 조례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기본이념’ 또는 ‘기본원칙’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례는 없지만, ‘장애인 움부즈만’ 제도를 장애인인권조례에 도입하면 조례의 실효성이 훨씬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노인복지 움부즈만’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4장(제23조~제27조)에 따른 ‘환자권리 움부즈만’을 두고 있고, 이 밖에도 시민감사, 안전감사, 노동 움부즈만 등 다양한 움부즈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 당사자로 구성된 움부즈만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만 하다.

33) 가령,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7조(실태조사)제1항은 “도지사는 행정기관의 자치법규와 지침과 정책에서의 차별사례 및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분야의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11.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가. 일반 사항

1) 조례 개요

제정일	1995. 3. 20	소관부서	생활보건과
근거법	지방자치법 제104조	조례 성격	자치조례
분야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 <input type="checkbox"/> 인권증진 <input type="checkbox"/> 편의증진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보장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정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시설/단체육성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단체 등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사업 및 지원 ▪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사업보고 		
제정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세종, 경기,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 9곳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취지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한센병관리위탁조례”)는 한센인의 권리 및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라기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 관리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³⁴⁾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조례로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다.

나. 내용 분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조례는 수탁단체에 관한 사항과 위탁사업의 내용

34)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중심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등 이 조례가 제정된 9곳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분석할 내용이 없다. 다만, 서울특별시 조례가 위탁하는 사업의 내용과 표현법을 시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례 제2조는 위탁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이동진료사업 포함)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
3.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
4. 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사업
6.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
7.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
9.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유도 및 관리
10. 기타 한센병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위 사업의 내용 중 1호부터 7호까지는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도 공통적으로 포함된 사업이다. 다만, 8호와 9호는 시대에 맞지 않는 조문이고 또 질병 그 자체가 아닌 질병을 가진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한센병이라는 질병은 관리해야 하지만 그 질환자는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 한센인을 비하하는 듯한 “계몽”이란 구시대적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조례를 개정하여 “계몽”이란 용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있다. 아울러 한센인을 위한 의료지원뿐 아니라 생활안정과 인권을 보장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수탁단체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자면, 부산광역시 조례 제2조제6호는 “한센병환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강구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또 2015년 전라북도 조례는 제2조제10호에 “한센사업대상자들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다.

이처럼 다른 자치단체들은 한센병관리위탁조례를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한센병 관리뿐 아니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조례 역시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 필요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서울특별시에 646명의 한센인들이 생존해 있다.³⁵⁾ 비록 소수이지만 그 어떤 장애인들보다 극심한 차별과 고통을 경험한 한센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요구된다.

35)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계획서(www.opengov.seoul.go.kr/sanction). 2016. 10. 4

12.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가. 일반 사항

1) 조례 개요

제정일	2015. 5. 14	소관부서	경제정책과
근거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조례 성격	위임조례
분야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 <input type="checkbox"/> 인권증진 <input type="checkbox"/> 편의증진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안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보장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지원 <input type="checkbox"/> 행정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시설/단체육성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지원대상 및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 장애인기업 우대 		
제정 현황	서울, 부산, 인천,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 9곳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취지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이하 “장애인기업조례”)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4)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5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415.2만원)의 53.8%에 불과하다. 또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0%에 머물고, 실업률은 6.3%로 전체 실업률 3.5%에 비해 1.8배 높다. 또 최근 1년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이 있었던 장애인은 75.3%로, 월 평균 추가비용 총액은 16만 4,2천원이다. 장애인의 소득구조가 가뜩이나 취약한데 여기에 더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까지 있어 장애인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소득보장(38.5%)을 요구하고 그 다음으로 의료보장(32.8%), 고용보장(8.5%), 주거보장

(6.4%)의 순이다.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전체 장애인의 소득 및 고용 현황이 이 정도면 중증장애인의 처지는 훨씬 더 열악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따라 각급 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소득 향상을 장려하고 있다.

나. 내용 분석

1) 법령상 체계정합성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또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기업 자금지원 우대(제9조),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제9조의2),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제15조)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조례는 지원계획 수립(제5조), 지원대상(제6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제7조), 장애인기업 우대(제8조),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제9조), 구매촉진(제10)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조례는 개별 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장애인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여서 특별히 장애인의 권리성과 인권보장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자주성 및 창의성

장애인기업조례가 제정된 9곳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조례가 가장 늦게 제정되었다. 조례의 내용 측면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특별히 창의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다.

4) 민주성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조례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 없다. 게다가 독립적인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장애인기업가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제9조제1항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면서 제2항에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부산광역시 조례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기업·기업인육성지원위원회’가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대체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조례와 경상북도 조례는 독립적인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특히,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구성)는 위원회 구성원 중에 장애인과 장애인기업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희망경제위원회가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추고 장애인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처럼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이해 당사자와 협의 절차를 생략할 경우, 서울특별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행정 생산성을 제고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장애인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시정부 정책 및 기업활동에 대해 협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독립적인 위원회로 둬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실효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조례 제8조는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한다.

- ①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회계담당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 임직원
 4. 경제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5. 기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대상자 요건/범위의 적정성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조례 제6조는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 지원대상으로 하되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서울특별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고 적절하게 규정한다.

6)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한 장애인기업조례 9건의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을 조례가 정하고 있는 행정적 지원시스템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19>와 같다.

주요 내용	서울	부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차별 지원계획	●	●	●	×	●	●	●	●	●
기업지원위원회	△	△	●	×	×	×	●	×	△
구매촉진	●	●	○	○	○	×	×	×	×
홍보	○	○	○	×	○	×	×	×	○
포상	○	○	×	○	○	○	×	○	○
권고·지도	×	×	×	×	○	○	○	○	×
경영지도	×	×	×	×	×	×	×	○	×
창업교육 프로그램	×	×	×	○	×	×	×	×	○
예산 지원	○	○	○	○	○	○	○	×	○
규칙/규정 유무	×	×	○	○	○	○	○	○	○

* 참고: 위 표에서 ●는 “강행규정”, ○는 “임의규정”, ×는 “규정 없음”, 그리고 △는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지만 다른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나타냄. 단, ‘규칙/규정 유무’에서는 ●는 시행규칙이 제정된 경우, ○는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지도 않고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표 19> 자치단체별 장애인기업조례 비교

표에서 보듯이, 자치단체별로 장애인기업조례 중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기업 지원위원회 규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조례는 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었지만 다른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는데 반해, 인천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독립적인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경상남도 조례는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 신기술 등 정보 제공과 더불어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서 참신하다.

7)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조례는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는 않는다.

다. 소결 및 제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조례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위원회로 격상시켜 서울특별시가 체계적으로 장애인기업지원 활동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3.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가. 일반 사항

1) 조례 개요

제정일	2012. 3. 15	소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근거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조례 성격	자치조례
분야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 <input type="checkbox"/> 인권증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편의증진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보장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지원 <input type="checkbox"/> 행정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시설/단체육성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권장 ▪ 편의시설 설치 ▪ 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책 마련 ▪ 시설 개선 재정지원 		
제정 현황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광역자치단체 9 곳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취지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이하 “최적관람석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³⁶⁾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관리 및 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의 장애인 관람석 중 50% 이상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조례이다.

3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내용 분석

1) 법령상 체계정합성

서울특별시 최적관람석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³⁷⁾에 근거한 조례다.

2)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서울특별시 최적관람석조례 제2조(정의)제4호는 “장애인 관련자”를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서울특별시 조례보다 4개월 뒤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조례에도 동일한 정의가 있다. 하지만 나머지 광역자치단체 조례에는 “장애인 관련자” 대신 “장애인 보호자”란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장애인들은 자신과 함께 다니는 사람을 무턱대고 “보호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무기력한 이미지를 조장하는 용어가 아니라 중립적인 용어인 “관련자”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조례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가 “시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은 현실에 맞지도 않고 장애인을 억지로 관람장으로 동원한다는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조례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는 “시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3) 자주성 및 창의성

서울특별시 최적관람석조례의 자주성과 창의성에 관하여 특별히 분석한 내용이 없다.

4) 민주성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서울특별시 최적관람석조례에는 설치계획과 실

3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고 따라서 의견청취 관련 조항도 없다.

5) 대상자 요건/범위의 적정성

최적관람석 조례를 제정한 9곳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7곳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가 정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강원도와 전라남도 조례³⁸⁾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삼는다. 서울특별시 최적관람석조례 역시 이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한 최적관람석조례 9건의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을 조례가 정하고 있는 행정적 지원시스템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20>과 같다.

주요 내용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최적관람석 설치	●	●	●	●	●	●	●	●	●
관람석 주변 편의시설	●	●	×	●	●	●	●	●	●
민간시설 설치권장	●	○	○	○	×	○	○	○	●
최적관람석 활용 시책	●	●	×	●	●	×	×	×	●
관련자(동반자) 관람석	●	●	●	●	●	●	●	●	●
예산지원	○	○	○	○	○	○	○	○	○
규칙/규정 유무	×	×	○	○	○	○	○	○	○

* 참고 : 위 표에서 ●는 “강행규정”, ○는 “임의규정”, 그리고 ×는 “규정 없음”을 나타냄.(단, ‘규칙/규정 유무’에서는 ●는 규칙/규정이 제정된 경우, ○는 조례에 규칙/규정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는 규칙/규정이 제정되지도 않고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표 20> 자치단체별 최적관람석조례 비교

38) 「전라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정의) “1. "장애인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최적관람석조례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제2항은 “서울특별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용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그런데 “관람석 주변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조례 제5조(편의시설)는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호하다. 참고로, 강원도 최적관람석조례 제5조(이동편의시설의 확충)는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이 이동 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 같은 조례 제8조(최적관람석의 관리)는 “최적관람석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하도록 표기”를 하도록 규정한다.

또 최적관람석의 규모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조례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를 비롯한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로 규정한다. 그런데 경상북도 조례 제4조는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퍼센트 이상”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4조는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즉 모든 장애인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조례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이란 단서를 붙이더라도 법령이 정한 공연장 등의 관람석이 모두 최적관람석이 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관람석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이 부분은 광역자치단체 최적관람석 조례 9건 모두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7) 자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서울특별시 조례는 필요 자원의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 소결 및 제언

서울특별시 최적관람석조례는 현재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적관람석 규정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자치단체들의 경우처럼 일반 장애인관람석의 50%가 아니라 100%까지 최적관람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 당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연장부터 100%를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14.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가. 일반 사항

1) 조례 개요

제정일	2013. 8. 1	소관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근거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조례 성격	위임조례
분야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 <input type="checkbox"/> 인권증진 <input type="checkbox"/> 편의증진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안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보장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지원 <input type="checkbox"/> 행정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시설/단체육성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제정 현황	서울 등 광역자치단체 14곳에서 제정되었음(세종, 강원, 충남 제외)		

2) 조례의 취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이하 “장애인고용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 및 시행, 의무고용비율 결정 및 현황 조사,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다.

보건복지부의 2014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9.0%에 머물고, 실업률은 6.3%로 전체 실업률 3.5%에 비해 1.8배나 높다. 또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조례는 이 같은 장애인 경제 상황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조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나. 내용 분석

1) 법령상 체계정합성

서울특별시 고용촉진조례는 장애인고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또 장애인고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고용(제14조), 고용촉진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제78조)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3%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제27조)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조례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제3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및 현황 조사(제5조, 제6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제7조),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제8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11조) 등을 규정한다. 다만, 조례에 사용되는 핵심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이 없어서 다소 혼란스럽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조례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또 광주광역시 조례 제2조는 “장애인”,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 용어를 정의한다.

2)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조례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는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개발·향상을 꾀함으로써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장애인고용법 제6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를 단순 재기재한 것이다.

이른바 “장애인의 자립 노력” 조항은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유래한다. 이 법률 제4조(자립에의 노력)는 “심신장애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심신장애자의 가족은 심신장애자의 자립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장애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권리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999년에 “장애인의 권리”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관련 규정은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조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조항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에 맞지 않게 이들에게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삭제해야 마땅하다.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조례에는 “장애인의 자립 노력” 같은 구시대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자주성 및 창의성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조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례와 비교해서 특별히 자주적이거나 창의적인 조항을 발견할 수 없다.

4) 민주성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조례에는 직업재활 계획 수립 또는 실태조사 과정에 장애인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 장애인고용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비록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서울특별시 조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대상자 요건/범위의 적정성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조례 제2조(시장의 책무)는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에는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 조항이 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고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취지를 잘 반영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같은 고용에 특히 취약한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 사항을 조문에서 발견할 수 없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조례 제8조는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 알선”을, 대전광역시 조례에는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사업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조례 역시 장애유형별 지원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6)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대도시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한 장애인고용조례 7건의 실현 가능성 및 강제성을 조례가 정하고 있는 행정적 지원시스템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21>과 같다.

주요 내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계획(시책)수립	●	●	●	●	×	●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조사	●	●	●	●	×	×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	×	●	●	×	×
취업 후 적응지도	○	×	×	×	×	×	×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	×	×	×	×	×	×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우대)	○	○	○	○	○	○	○
고용장려금의 사용	×	×	●	×	×	×	×
민간위탁 사업자의 고용촉진	×	×	×	○	×	×	×
예산 지원	○	○	○	×	○	○	○
규칙/규정 유무	○	×	○	○	○	×	○

* 참고 : 위 표에서 ●는 “강행규정”, ○는 “임의규정”, 그리고 ×는 “규정 없음”을 나타냄.(단, ‘규칙/규정 유무’에서는 ●는 규칙/규정이 제정된 경우, ○는 조례에 규칙/규정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는 규칙/규정이 제정되지도 않고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표 21> 자치단체별(대도시) 장애인고용조례 비교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조례 제5조는 공공기관 3% 법정 의무고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 투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를 규정한다. 비록 혼시적 규정이긴 하지만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조항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경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조례에도 의무고용비율 확대 조항이 있지만,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조례에는 법정 의무고용비율만 언급한다.

특히, 대구광역시 조례 제11조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은 시, 구·군 및 지방공기업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하는데 사용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처를 제한하기도 한다.

7)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조례에는 재원 조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소결 및 제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조례는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 제4조의 “장애인의 자립노력”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구시대적인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그 대신 “장애인의 권리” 조항을 그 자리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반대로 장애인고용위원회 설치 같은 선도적이고 진취적인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15.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가. 일반 사항

1) 조례 개요

제정일	2013. 3. 28	소관부서	기획담당관
근거법	없음	조례 성격	자치조례
분야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 <input type="checkbox"/> 인권증진 <input type="checkbox"/> 편의증진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보장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정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시설/단체육성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시책 수립 ▪ 지원 범위 ▪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정 현황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광역자치단체 11곳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취지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이하 “장애의원조례”)는 서울특별시 중증장애 시의원에게 보조서비스 및 보조기구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다.

나. 내용 분석

1) 법령상 체계정합성

장애의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39)의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조례다.

2)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39)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의원조례 제3조(기본원칙)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장애의원에 대한 동등한 인권 보장을 선언한다.

3) 자주성 및 창의성

장애의원조례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특별히 자주성이나 창의성을 발견할 수 없고, 다만 제3조에 장애의원에 대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4) 민주성

장애의원조례는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민주성을 분석할 내용이 없다.

5) 대상자 요건/범위의 적정성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의원조례 제2조(정의)는 “중증장애의원”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정의한다. 서울특별시뿐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례도 동일하게 대상자 범위를 설정하지만, 「광주광역시의회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의 경우 “중증장애의원”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의원”을 대상으로 삼는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2조(정의)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장애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1~3급 중증장애의원뿐 아니라 4~5급 경증장애의원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의원조례 제6조는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지원 범위를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장”,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시 우선적 고려”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례보다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한 지원 범위는 주로 물리적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시각 및 청각장애가 있는 의원을 위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참고로, 강원도 조례 제6조(지원범위)제3호는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규정함으로써 청각 및 시각장애가 있는 의원에 대한 지원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6)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한 장애의원조례 11건의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을 조례가 정하고 있는 행정적 지원시스템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22>와 같다.

주요 내용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계획(시책) 수립	●	×	×	×	×	●	×	●	×	×	●
보조인력 배치	○	○	○	○	○	○	○	○	○	○	○
이동편의시설 보강	○	○	○	○	×	○	○	○	○	○	○
보조기구(서비스) 제공	○	×	×	×	×	×	×	○	×	×	○
좌석 우선 배치	○	○	○	○	○	×	○	○	○	○	×
정보접근(수화, 점역, 대독, 대필 등)	×	×	×	×	×	×	×	○	×	×	○
보조인력 신분 규정	○	○	×	○	○	×	○	○	○	○	○
규칙/규정 유무	×	×	●	×	×	●	●	○	×	×	○

* 참고 : 위 표에서 ●는 “강행규정”, ○는 “임의규정”, 그리고 ×는 “규정 없음”을 나타냄.(단, ‘규칙/규정 유무’에서는 ●는 규칙/규정이 제정된 경우, ○는 조례에 규칙/규정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는 규칙/규정이 제정되지도 않고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표 22> 자치단체별 장애의원조례 비교

서울특별시 장애의원조례와 다른 자치단체 조례들 대부분은 장애의원에게 보조인력 배치와 이동편의시설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삼는다. 다만, 강원도와 경상북도 조례가 장애의원에게 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정보접근을 보장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7)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서울특별시 장애의원조례는 특별한 재원조달 방법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를 정확하게 규정한다.

다. 소결 및 제언

서울특별시 장애의원조례는 장애의원에게 물리적 접근만 보장하고 있다. 이는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만을 고려한 것이어서 강원도와 경상북도 조례처럼 시각장애의원 또는 청각장애의원을 위한 정보접근도 보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16.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일반 사항

1) 조례 개요

제정일	2016. 1. 7	소관부서	보건의료정책과
근거법	정신보건법	조례 성격	위임조례
분야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 <input type="checkbox"/> 인권증진 <input type="checkbox"/> 편의증진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보장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지원 <input type="checkbox"/> 행정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시설/단체육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취약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 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 		
제정 현황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전남, 경북 등 광역자치단체 6곳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취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국가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2009)와 OECD 정신보건 정책 평가보고서(OECD, 2012)는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의 법적 능력, 비자의 입원, 치료 등에 관한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병원과 장기요양원 입원중심 모델에서 지역사회 기반 모델로 옮겨야 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14년 10월 3일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보고’에 대해 「정신보건법」의 개정안인 「정신건강증진법」은 장애를 근거로 자유를 박탈하고 있으며, 현행 「정신보건법」도 폐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욕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병원 내에서 정신장애인이 독방에서의 감금과 잦은 구타, 강박과 과도한 약물치료 등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치료로 간주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조윤화 외, 2014).

이 같은 국내외적 압력에 정부는 결국 「정신보건법」을 전부개정하여 2015년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증진법”)을 만들어 201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고, 비자의 입원·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기존 법률을 일부 개선하고 보완하였다.

이에 맞춰 서울특별시는 2016년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이하 “정신건강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상담, 치료, 사례관리의 활성화와 지역정신보건사업 시행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내용 분석

1) 법령상 체계정합성

정신건강조례는 현행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참고로, 2017년 5월 시행되는 정신건강증진법은 아래 <표 23>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무를 위임한다.

장 구분	광역자치단체(장) 위임 조항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계획(제7조제2항) ■ 광역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제12조제2항)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제15조제2항)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정신병원설치(제21조)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제22조)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제26조)
제4장 복지 서비스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서비스의 개발(제33조) ■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제34조) ■ 평생교육지원(제35조) ■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제36조) ■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제37조) ■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제38조)
제6장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제53조)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제54조)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제66조),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지원(제77조) ■ 단체·시설의 보호 육성(제78조) ■ 경제적 부담의 경감(제79조) ■ 진단 및 치료 비용 지원(제80조) ■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 비용 보조(제82조)
---------------	--

<표 23> 정신건강증진법의 자치단체 위임사무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조례도 많은 변화를 겪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t 서울특별시의회는 여기에 대비학 있어야 한다.

2)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제3호에 시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도록 정신질환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제한다. 또 제5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제2항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과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방법, 내용, 시기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반면, 제10조에서 종사자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둬으로써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⁴⁰⁾

그런데 2017년 5월 30일 시행을 앞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2조(기본이념)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⁴¹⁾ 더욱이 이 법률은 제68조(입원 등의 금지 등), 제69조(권익보호), 제70조(인

40)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제10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 ①시장은 센터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①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가 권장되어야 한다. ⑥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⑦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⑧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⑨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권교육), 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73조(특수치료의 제한),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같은 조항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보장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조례는 현행 「정신보건법」을 대체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춰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할 필요가 있다.

3) 자주성 및 창의성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조례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특별히 자주성이나 창의성을 발견할 수 없다.

4) 민주성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조례는 계획 수립 과정에 정신장애 당사자의 참여 보장이나 의견청취에 관한 조항이 없다. 아울러 수립된 계획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규정도 없어 조례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대상자 요건/범위의 적정성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조례는 현행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하지만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구법보다 신법이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더 협소하게 규정한다.

6)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한 정신건강조례 6건의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을 조례가 정하고 있는 행정적 지원시스템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24>와 같다.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주요 내용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전남	경북
계획 수립	●	●	●	●	●	●
정신보건(증진)센터 설치	○	○	○	●	●	○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	○	○	○	×	○
정신보건증진위원회	×	●	×	×	×	×
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	●	×	×	×	×	×
실태조사	×	●	●	×	×	●
응급의료체계 구축	×	●	×	×	×	●
비밀누설의 금지	×	●	●	×	×	×
예산 지원	○	○	○	○	○	○
규칙/규정 유무	○	×	○	○	○	○

* 참고 : 위 표에서 ●는 “강행규정”, ○는 “임의규정”, 그리고 ×는 “규정 없음”을 나타냄.(단, ‘규칙/규정 유무’에서는 ●는 규칙/규정이 제정된 경우, ○는 조례에 규칙/규정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는 규칙/규정이 제정되지도 않고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표 24> 자치단체별 정신건강조례 비교

위 표에서 보듯이,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조례가 특별히 실현가능성과 강제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정신건강증진위원회 구성,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7)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조례 제8조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우선 임대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다. 소결 및 제언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조례는 새로운 상위법령이 시행되면 용어의 변화부터 주요 사업의 추가까지 큰 폭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때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 가령 계획수립에서 정신장애 당사자의 참여 및 의견청취, 그리고 수립된 계획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을 덧붙여서 조례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더욱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17.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일반 사항

1) 조례 개요

제정일	2012. 9. 28	소관부서	보건의료정책과
근거법	정신보건법	조례 성격	위임조례
분야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 <input type="checkbox"/> 인권증진 <input type="checkbox"/> 편의증진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보장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지원 <input type="checkbox"/> 행정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시설/단체육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취약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직업재활의 지원 ▪ 전문위원회 구성 		
제정 현황	서울, 전북 등 광역자치단체 2곳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취지

앞서 설명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와 지금 설명할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복귀조례”)는 둘 다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지만, 전자가 의료적 관점의 조례라면 후자는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조례이다. 사회복귀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자활·직업재활·교육·훈련 지원,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내용 분석

1) 법령상 체계정합성

사회복귀조례는 현행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2017년 5월 30일 시행되는 정신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무를 위임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조례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조례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다.

2)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조례에는 형식적이거나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문이 있지만, 사회복지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무한 상태다. 앞서도 강조하였듯이 사회복지조례 역시 현행 「정신보건법」을 대체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증진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정신질환자의 권리’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 자주성 및 창의성

광역자치단체 중에 사회복지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특별시(2012년)와 전라북도(2015년) 뿐이다. 서울특별시 조례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제정되었으므로 자주성 측면에서 평가를 받을만하다. 하지만 「정신보건법」의 틀 안에서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창의성 측면에서는 특별하게 평가할 부분이 없다.

4) 민주성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조례는 계획 수립 규정이 없고 5년 마다 실태조사(제4조)를 한다는 규정만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신장애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아울러 수립된 계획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규정도 없어 조례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대상자 요건/범위의 적정성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조례는 현행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하지만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구법보다 신법이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더 협소하게 규정한다.

6)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조례가 먼저 제정되었지만, 전라북도 조례가 내용 면에서 더욱 충실하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시설 지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직업재활 지원, 자활 지원 등인 반면, 전라북도 조례는 여기에 더해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제4조)와 정신질환자사회복지지원위원회(제5조~제9조)에 관한 규정을 세세하게 두고 있다.⁴²⁾ 반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정신보건사업계획은 정신건강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원회 관련 규정은 사회복지조례 제13조(전문위원회 구성)에 간략하고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아울러 정신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 복지서비스와 권익 지원에 관한 조항이 대폭 추가되어야 한다. 새 법률은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제34조), 평생교육지원(제35조),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제36조),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제37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제38조), 단체·시설의 보호 육성(제78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제79조) 같은 조항을 자치단체 위임사무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조례는 이 같은 조항을 포함하는 대폭적인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

7)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조례 제6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우선 임대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다. 소결 및 제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조례는 정신건강조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위법령이 시행되면 용어의 변화부터 주요 사업의 추가까지 큰 폭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때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 가령 사회복지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원회에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이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사회참여를 더욱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신건강증진법은 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배제함(제15조)에 따른 부작용을 완충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위임사무에 그치지 않고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도 타 장애인과 동일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선도적인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42)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회 설치) ①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지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지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가. 일반 사항

1) 조례 개요

제정일	2016. 5. 19	소관부서	도시공간개선단
근거법	없음	조례 성격	자치조례
분야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 <input type="checkbox"/> 인권증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편의증진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보장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지원 <input type="checkbox"/> 행정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시설/단체육성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적용 ▪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 유니버설디자인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제정 현황	서울, 대전, 경기, 전북,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 5곳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취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이하 “유니버설디자인조례”)는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조례다. 이 같은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이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유니버설디자인도시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광범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기존의 ‘무장애(barrier-free)’ 개념을 뛰어넘어 도시환경조성에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개념을 적용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 서울이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원대한 목표이기도 하다.

나. 내용 분석

1) 법령상 체계정합성

장애인의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⁴³⁾의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조례다.

2)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조례는 특별히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성과 인권보장성을 언급하지 않지만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3) 자주성 및 창의성

다른 자치단체보다 조문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특별히 창의적이거나 자율적인 조항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제2조(정의)에서 이 조례에 말하는 “시민”을 서울특별시에 거주지 또는 직장을 둔 사람뿐 아니라 “관광객을 포함한 시를 방문한 사람 등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일국의 수도이자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참신한 조항이다. 또 조례 제22조(시민참여)는 시장은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둔 것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는 조항이다.

4) 민주성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시민의 역할(제5조)과 시민참여(제22조)에 관한 조항은 있는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는 점은 아쉽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0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43)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5) 대상자 요건/범위의 적정성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조례 제7조가 정한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건축물 등 물리적 환경에 국한된다.⁴⁴⁾ 그렇지만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은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정보 및 제품에 대한 접근성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조례(2016. 8. 12 제정) 제6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3호의 여객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시설물
4.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 정보서비스
5.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상품이나 제품의 개발 및 보급체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에서 보듯이 대전광역시 조례는 장애인 편의시설, 여객시설, 공공시설, 정보매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품 개발 등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로 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조례의 범위보다 넓다.

6)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대도시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한 유니버설디자인조례 5건의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을 조례가 정하고 있는 행정적 지원시스템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25>과 같다.

44)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 2.«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3.«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제5호에 따른 심의대상 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심의대상 5.«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6.«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별표에 따른 심의대상 7.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요 내용	서울	대전	경기	전북	제주
기본계획 수립	●	●	●	●	●
실태조사	×	○	●	●	×
가이드라인 수립	●	×	●	×	×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	×	○	×	×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	●	×	●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	○	×	○	○	○
교육 및 홍보	●	○	●	●	●
예산 지원	○	○	○	○	○
규칙/규정 유무	×	×	○	○	○

* 참고 : 위 표에서 ●는 “강행규정”, ○는 “임의규정”, 그리고 ×는 “규정 없음”을 나타냄.(단, ‘규칙/규정 유무’에서는 ●는 규칙/규정이 제정된 경우, ○는 조례에 규칙/규정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는 규칙/규정이 제정되지도 않고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표 25> 자치단체별 유니버설디자인조례 비교

위 표에서 보듯이,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조례는 다른 자치단체 조례와 비교할 때, 가이드라인 작성,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유니버설디자인 센터 등 조례에서 담아야 할 주요 내용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편이다. 다만, 실태조사 조항이 빠진 것이 아쉽고, 이 조례의 적용 범위, 조항 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조례를 더 세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7)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조례는 사업별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소결 및 제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조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례들보다 조문 구성이 짜임새가 있고 구체적이다. 다만,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 관련 조항이 없고,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정보접근 및 제품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차후 보완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아울러 조례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시행규칙 제정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19.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가. 일반 사항

1) 조례 개요

제정일	2016. 3. 24	소관부서	정보기획관
근거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조례 성격	자치조례
분야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 <input type="checkbox"/> 인권증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편의증진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 <input type="checkbox"/> 고용안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보장 <input type="checkbox"/> 여가문화지원 <input type="checkbox"/> 행정인프라 <input type="checkbox"/> 시설/단체육성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 추진 사업 ▪ 웹접근성위원회 설치 		
제정 현황	서울, 부산, 광주, 전북 등 광역자치단체 4곳에서 제정되었음		

2) 조례의 취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이하 “웹접근성조례”)는 장애인, 고령자 등 신체적, 사회적, 기술적 제약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례는 실태조사, 시행계획, 웹접근성위원회 운영과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기술 상담,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나. 내용 분석

1) 법령상 체계정합성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고령자 등에게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 우선 구매 노력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웹접근성조례는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웹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등의 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권리성 및 인권보장성

서울특별시 웹접근성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3) 자주성 및 창의성

2016년 3월 24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웹접근성조례는 2014년 2월 12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웹접근성조례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조례이다. 두 자치단체가 법규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자치법규 제정 시 자주성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위상에 맞게 조례 내용을 보완하여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현행 서울특별시 조례 제5조는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제3장이 규정한 “웹사이트의 접근성 준수”에 국한하는데, 여기에 더해 제4장이 규정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을 통한 정보 취득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오늘날 정보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면 서울특별시 조례의 선도성과 자주성이 제고될 수 있다.

4) 민주성

서울특별시 웹접근성조례 제5조(실태조사)는 웹접근성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

년하고 그때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

한편, 조례 제8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웹접근성위원회’를 둔 다면서 제2항에서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에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입장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위원회가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추고 서울특별시 웹접근성조례가 그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처럼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이해 당사자와 협의 절차를 생략할 경우, 서울특별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행정 생산성을 제고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입장에서는 시정부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웹접근성위원회를 독립적인 위원회로 둬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실효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대상자 요건/범위의 적정성

서울특별시 웹접근성조례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다. 조례 내용만 보면, 이 조례가 관내 모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광주광역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 제2조(정의)는 “웹 사이트”를 “광주광역시와 그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으로 조례의 적용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제한한다.

6)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대도시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한 웹접근성조례 4건의 실현가능성 및 강제성을 조례가 정하고 있는 행정적 지원시스템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26>과 같다.

주요 내용	서울	부산	광주	전북
계획 수립	●	●	●	●
실태조사	●	○	×	×
의견청취	●	●	×	×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	○	×	×
웹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	○	×	×
웹접근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웹사이트 구축과 유지 및 개선 (품질 마크 획득, 모니터링)	×	×	●	●
관련 단체 및 기관에 대한 교육, 홍보	○	○	×	×
예산 지원	×	×	○	○
규칙/규정 유무	×	×	○	○

* 참고 : 위 표에서 ●는 “강행규정”, ○는 “임의규정”, 그리고 ×는 “규정 없음”을 나타냄.(단, ‘규칙/규정 유무’에서는 ●는 규칙/규정이 제정된 경우, ○는 조례에 규칙/규정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는 규칙/규정이 제정되지도 않고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표 26> 자치단체별 웹접근성조례 비교

위 표를 보면 서울특별시과 부산광역시 조례,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조례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4곳의 조례 명칭이 전자는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이고 후자는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 조례’이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실태조사의 시기와 강행규정 여부만 빼면 부산광역시 조례와 거의 동일하고 전라북도 조례는 광주광역시 조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 볼 때,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그때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웹접근성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점, 품질 마크 획득, 모니터링 등 웹사이트의 유지와 개선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7)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

서울특별시 웹접근성조례에는 예산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 이 조례의 구성상 특별히 예산을 반영할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 반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조례는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노

력해야 한다”는 혼시적 규정이 있다.

다. 소결 및 제언

서울특별시 웹접근성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는 등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모니터링, 기술상담, 품질인증 등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범위를 기존의 웹사이트 뿐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까지 확대하고, 웹접근성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V. 서울특별시 신규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 방안

이 장은 기존의 서울특별시 조례 분석에서 나타난 공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기존 법률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신규 조례 입법을 위한 제안을 한다.

먼저, 기존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나타난 공통의 문제를 통해 향후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유의해야 할 원칙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조항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관련 조례를 입법할 때 기본적으로 ‘계획수립’, ‘실태조사’, ‘의견청취(주민참여)’를 서로 연관된 하나의 묶음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라 하더라도 장애여성, 중증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등 ‘장애 다양성(disability diversity)’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필요의 절박성에 기초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따라서 장애인 관련 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더 높고, 그 유형이 더 소수이고, 낙인과 차별이 더 심한 장애인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주요 장애인 관련 조례의 경우 ‘기본이념’ 또는 ‘기본원칙’ 조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조례의 철학, 가치, 지향이 분명해지고 조례 집행자들이 조례 제정의 배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주요 장애인 관련 조례의 경우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조례를 보완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많은 자치단체들의 조례가 특정 조항의 일부 사항과 관련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시행규칙’ 조항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규칙을 둔 조례는 매우 드물다.

다섯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추진 상황을 지방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실제로 해당 조례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섯째, ‘자문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에서 정신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유형, 여성 장애인의 참여 비율, 장애정도를 고려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위원회를 독립적인 별도 기구로 두어야 하지 다른 자치법규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그 역할과 기능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이 장에서는 위 6가지 일반 원칙을 당연히 포함한다는 전제 아래 서울특별시의회가 새로 입법할 조례에 특별히 기재해야 할 여타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가. 필요성 및 의의

지금까지 장애인의 집단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과 조례가 상당히 제정되었고 복지 서비스가 확충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들도 선진국 장애인들처럼 서서히 문화와 예술에 대한 욕구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장애인이 주도하는 극단, 예술단, 문학 및 문화단체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인프라와 행사도 활발해지고 있다. 2013년부터 장애인문화·예술제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고,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설립되었고 2016년에는 서울 대학로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문을 열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기반 조성과 장애를 가진 개인의 문화 및 예술 욕구 실현과 자기 발전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법률적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하고, 제2항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다.(시행령 제23조의2)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하고,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 입법 사례

현재 문화·예술활동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2013. 7. 1. 제정), 경기도(2014. 10. 2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2016. 3. 16. 제정), 경상북도(2016. 7. 11. 제정) 4곳이고, 기초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동구와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경기도 김포시, 경상남도 거제시, 전라남도 나주시 등이 있다.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광역자치단체 4곳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들은 목적, 정의, 시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이다. 기존 조례를 토대로 일부 조항을 추가하고 개선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 기초안을 제시하면 <표 27>과 같다.

조문 제목	주요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문화·예술인”, “문화·예술”,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문화소외계층”, “문화이용권” 등
기본원칙 (기본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 및 참여권 보장에 대한 당위성과 그 가치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차별 시정 ■ 장애인 문화·예술 작품 구매 노력 ■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
기본계획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형, 정도, 성별을 고려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 장애인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 육성 및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 ■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모니터링 ■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 실태조사 실시 및 의견청취 ■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 시의회에 보고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 장애 유형, 정도, 성별을 고려한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 ■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행사 지원 ■ 문화이용권 지급 ■ 장애인 문화·예술 작품 판매 지원 ■ 장애인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 운영 지원
문화·예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사항: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구성: 민과 관, 전문가와 장애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정신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유형, 여성장애인의 참여 비율,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구성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홍보, 교육, 정보제공 ■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사업 ■ 장애인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장애인 문화·예술품 판매 사업 ■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

※ 이탤릭체 글자는 다른 자치단체 조항에는 (거의) 없는 규정을 뜻함.

〈표 27〉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 기초안

2.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가. 필요성 및 의의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4월 20일 보도자료⁴⁵⁾를 내고, 장애인 중 87.4%가 여행 중 불편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불편을 느낀 이유로는(중복 응답)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 부족’ 74.1%, ‘장애인 여행상품 부재’ 44.8%, ‘비싼 여행비용’ 30.8%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는 장애인의 새로운 사회참여 통로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여행 욕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문화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이다. 서울특별시는 ‘무장애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 당사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하다. 서울특별시가 장애인 여행과 관광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여행 코스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면 국내는 물론 국외 장애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결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유엔관광기구(UNWTO)가 권고하는 ‘모두를 위한 여행(Tourism for All)’ 또는 ‘접근가능한 여행(Accessible Tourism)’ 정책에 부합함으로써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나. 법률적 근거

2014년 5월 28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의 관광 및 여행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

45) http://kca.go.kr/brd/m_32/view.do?seq=1788. 2016. 10. 4

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다.(시행령 제41조의3)

다. 입법사례

장애인, 노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5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시행규칙까지 제정하였다. 부산광역시는 2016년 8월 3일에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 조례는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가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물리적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선 관광약자 또는 관광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시설에 대한 물리적 환경은 이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개선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로 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조례는 관광약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 장애유형에 따른 관광해설사 등 인적 지원, 그리고 관광약자지원위원회, 관광약자지원센터 등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관광”과 “여행”을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관광”이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유적지, 자연, 건축물 등 볼거리를 찾아 떠난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여행”은 떠남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볼거리뿐 아니라 사람들과 만남, 색다른 음식 경험, 자기 성찰과 휴식 같은 개인의 가치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관광진흥법」은 “여행”과 “관광”을 혼용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 조례는 “관광” 개념만 사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경우 두 개념 중 하나를 특정하여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구분 없이 혼용할 것인지 미리 살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는 “관광”과 “여행”을 혼용하였다.

광역자치단체 2곳의 관광약자 지원 조례를 종합하면 목적, 정의, 시도지사 책무, 추진계획 수립, 관광환경 조성 사업,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관광약자위원회 설치, 관광약자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조례 중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를 제외하고 일부 조항을 추가하고 개선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조례 기초안을 제시하면 <표 28>과 같다.

조문 제목	주요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근거 ■ 관광약자의 여행 및 관광 장려 및 지원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약자”, “관광취약계층”, “여행이용권”, “접근가능한 여행지(또는 “관광약자 여행 코스)”, “관광약자 여행가이드(“관광약자 관광해설사)”” 등
기본원칙 (기본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여행 및 관광 활성화의 당위성과 그 가치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약자의 여행 및 관광 활성화 시책 마련 ■ 관광약자의 여행 및 관광에 대한 차별 시정 ■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
기본계획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약자 여행 및 관광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 장애 유형, 정도, 성별을 고려한 관광약자 여행 및 관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관광약자 관광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 ■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 관광약자 여행가이드(또는 관광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 ■ 관광약자 단체 및 기관 육성 및 지원 ■ 관광약자를 위한 여행 코스 개발 ■ 관광약자 여행 및 관광 관련 모니터링 ■ 관광약자 여행 및 관광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 실태조사 실시 및 의견청취 ■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 시의회에 보고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형, 정도, 성별을 고려한 관광약자 여행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관광약자 여행 및 관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안내서비스,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 관광약자 여행 및 관광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 ■ 문화이용권 지급 ■ 관광약자 문화·예술 작품 판매 지원 ■ 관광약자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 운영 지원
관광약자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사항: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구성: 민과 관, 전문가와 장애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정신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유형, 여성장애인의 참여 비율,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구성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약자 여행 및 관광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제공 ■ 관광약자의 자유로운 여행에 관한 인식개선교육 사업 ■ 관광약자 여행가이드(또는 관광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 ■ 관광환경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관광약자를 위한 여행 코스 개발 ■ 관광약자의 여행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

※ 이탤릭체 글자는 다른 자치단체 조항에는 (거의) 없는 규정을 뜻함.

<표 28>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조례 기초안

3.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가. 필요성 및 의의

서울특별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은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자기계발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다행히,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기본법」 에 따라 노들장애인야학, 강서누리장애인야학, (사) 장애인아카데미를 평생교육시설로 인가하고 한 곳 당 2억~3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교육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다보니 초중등 졸업자격 검정고시 과정에만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 때문에 장애인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서울특별시도 다른 자치단체들처럼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법률적 근거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 과정)는 일반 평생교육 기관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평생교육 지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별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질환

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에도 대상자의 장애유형만 다를 뿐 내용이 동일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이 여러 법률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다. 입법사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처음 만든 곳은 기초자치단체인 경상남도 사천시(2013. 10. 30. 제정)다. 이어서 전라북도(2015. 7. 3.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2015. 8. 14. 제정), 경기도(2016. 2. 24. 제정), 제주특별자치도(2016. 6. 22. 제정), 광주광역시(2016. 7. 1. 제정)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이다.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4곳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들은 목적, 정의, 시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지원 사업,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위탁, 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전라북도 조례의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주목된다. 이 조례의 핵심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이다. 기존 조례를 토대로 일부 조항을 추가하고 개선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 기초안을 제시하면 <표 29>와 같다.

조문 제목	주요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36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근거 ■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 ■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평생교육의 의의, 당위성, 가치 등

(기본이념)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 장애인평생교육계획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계획에 반영
기본계획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 방법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 장애 유형, 정도, 성별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 일반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차별 시정 ■ 실태조사 실시 및 의견청취 ■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 시의회에 보고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관계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평생교육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사항: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구성: 민과 관, 전문가와 장애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장애유형, 여성장애인의 참여 비율,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구성
평생교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비영리법인, 단체, 공공기관에 위탁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기준 및 위탁 관련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평생교육시설 설 보조금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평생교육 운영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 ■ 장애인평생교육 운영기관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비 ■ 장애인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업비

※ 이탤릭체 글자는 다른 자치단체 조항에는 (거의) 없는 규정을 뜻함.

<표 29>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기초안

4. 서울특별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조례

가. 필요성 및 의의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4)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소득이 월평균 평균 가구소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주거 마련에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은 주택에 살기 어려워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의 노후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서울특별시도 관련 조례를 입법하여 법률의 시행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나. 법률적 근거

헌법 제35조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거지원계획의 수립(제6조), 주거실태조사(제7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제10조), 주택개조비용 지원(제15조), 주거지원센터 설립(제17조) 등을 요구한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 보급)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 입법사례

2012년 2월 22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관련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2013. 5. 16. 제정)뿐이다.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광역자치단체 2곳의 주거약자 지원 조례들은 목적, 정의, 시도지사의 책무,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약자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주거복지 조례의 중요성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더욱 크다.

장애인 등 주거약자들이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조례에 최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제2항에서 정한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인 8% 이상을 조례에 규정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신규건설 형태가 아닌 기존 주택의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등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근거와 방향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조례를 토대로 일부 조항을 추가하고 개선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약자 지원 조례 기초안을 제시하면 <표 30>과 같다.

조문 제목	주요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 근거 ■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질적 수준 향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 “주거약자” 등
기본원칙 (기본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의의, 당위성, 가치 등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의 추진 ■ 주거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노력
기본계획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형, 정도, 성별을 고려한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 ■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 ■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 ■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 ■ 주거복지사업 재정 운영 ■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 시의회에 보고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약자의 가구특성 ■ 주거약자의 주택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 주거약자의 주택시설 및 설비 ■ 주거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 주택가격 및 임대료 ■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현황
주거복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약자용 주택을 10% 이상 보급하기 위한 노력 ■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원사업 ■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 지원사업 ■ 재난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및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주택개량 자금 지원사업 ■ 주거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 지원사업 ■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주거복지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사항: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구성: 민과 관, 전문가와 장애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장애유형, 여성장애인의 참여 비율,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구성
주거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사업의 정보제공 및 상담 ■ 주거복지전달 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 ■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주거약자 및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 이탤릭체 글자는 다른 자치단체 조항에는 (거의) 없는 규정을 뜻함.

<표 30> 서울특별시 주거약자 지원 조례 기초안

5.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가. 필요성 및 의의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의 관리 및 치료에 소요되는 사회적 부담도 급증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행 장애관련 법률들은 장애인 복지와 인권에 치중하고 있어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건강 등의 문제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었으면 부담하지 않았을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추가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4)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이 있었던 장애인은 75.3%로 월 평균 추가비용 총액은 16만 4.2천원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2015년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립병원들이 현장에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시립병원의 역할과 방향, 지원방안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장애인 건강권법이 지나치게 의료모형에 치중하고 있다는 장애인 사회의 비판⁴⁶⁾을 고려할 때 장애인들이 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나. 법률적 근거

2017년 12월 30일 시행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할 의무, 장애인에게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할 의무,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해 홍보할 의무를 규정한다. 아울러 이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제7조),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제8조),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 보장(제9조), 장애인과 그 가

46) 동아일보 인터넷판 2016년 7월 27일 기사 “장애인건강권법 제정됐지만 체감도는 ‘글썸’…실효성 의문” 참고

족에 대한 건강 및 건강권 교육(제13조, 제14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제16조), 장애인 의료비 지원(제17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제20조) 같은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 입법사례

아직 법률 시행 이전이어서 장애인 건강권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많지 않고, 2015년 10월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가 유일한 입법례이다.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대전광역시 조례는 목적,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 단 4개 조항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울특별시 조례 제정을 위해 참고하기에 부적절하다. 오히려 서울특별시 조례는 향후 시행될 상위법령에 기초하여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 상위법령이 아직 완비되지는 않았으나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기초안을 제시하면 <표 31>과 같다.

조문 제목	주요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장애인의 건강권 및 장애유형에 맞는 의료접근성 보장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권”,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건강코디네이트” 등
기본원칙 (기본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의 의의, 당위성, 가치 등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접근성 보장 시책 강구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 ■ 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
기본계획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형, 정도, 성별을 고려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 ■ 장애인 보건행정체계의 현황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운영 방안 ■ 장애인과 그 가족 대상 건강 교육 ■ 장애인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 ■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 지방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 장애인 건강권 관련 민간단체 지원 ■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 시의회에 보고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립병원의 기능 및 역할의 확대를 통한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강화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 및 그 가족 대상 건강교육 지원 ■ 장애인 건강 검진 지원 ■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지원 ■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 ■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 ■ 장애인 건강권 관련 단체 및 기관 지원 ■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건강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사항: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구성: 민과 관, 전문가와 장애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장애유형, 여성장애인의 참여 비율,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구성
건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에 관한 정보제공, 상담, 교육 ■ 장애인 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 건강 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등 전문가 양성 ■ 장애인 건강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 장애인 건강 관련 홍보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 이탤릭체 글자는 다른 자치단체 조항에는 (거의) 없는 규정을 뜻함.

<표 31>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기초안

6.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조례

가. 필요성 및 의의

장애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의 장애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조기기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게다가 각급 자치단체별로 ‘보조기구 수리 지원 조례’, ‘보조기구센터 지원 조례’,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 조례’,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 그 지원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가 제정되어 포괄적인 보조기기 지원의 길이 열렸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선진적인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나. 법률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2016년 12월 30일 시행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제7조), 보조기기 교부 사업(제8조),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사업(제11조), 보조기기 연구개발 지원사업(제22조) 등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운영(제14조)할 수 있다.

다. 입법사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직 시행 전이어서 이 법률에 근거한 조례가 아직은 없다. 다만,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주광역시 동구, 경기도 연천군과 하남시, 충청남도 홍성군, 경상북도 포항시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보조기구 수리’ 또는 ‘보조기구 서비스’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기존의 보조기구 지원 또는 서비스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제정된 것이어서 서울특별시 조례 제정을 위해 참고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서울특별시 조례는 향후 시행될 상위법령에 기초하여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갖추어 필요가 있다. 상위법령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으나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조례 기초안을 제시하면 <표 32>와 같다.

조문 제목	주요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기기”, “보조기기 서비스”, “지역보조기기센터” 등
기본원칙 (기본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노인 등의 보조기기 활용의 의의, 당위성, 가치 등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기기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 노력 ■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
기본계획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 보조기기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 ■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현황 및 개선 ■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 시의회에 보고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방문서비스 및 보조기구 상담 ■ 보조기구 교부 및 대여, 사후관리 지원 ■ 보조기구 이용자 안전교육 ■ 보조기기 관련 정보제공 ■ 보조기구 활용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보조기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기기 관련 상담, 평가, 자원연계, 사후관리, 사례관리, 사용자 교육 ■ 보조기기 전시장, 체험장 운영 ■ 보조기기 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인식개선 교육, 홍보 ■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 보조기구 관련 분야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이탤릭체 글자는 다른 자치단체 조항에는 (거의) 없는 규정을 뜻함.

<표 32>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조례 기초안

7.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가. 필요성 및 의의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였지만, 우리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정보이용, 학습에 여전히 제약이 많다. 심지어 농학교에서조차 수화가 아닌 구화로 교육을 하고 있고, 농학교 교사 중 수화언어 사용 가능자가 10%도 되지 않아 농인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선배들에게 수화언어를 배워야 하는 형편이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농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확충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농인의 언어주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농인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인간관계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농인 당사자들은 오래 전부터 한국수어법 제정을 요구해왔으며, 마침내 2015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2016년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과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선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 법률적 근거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제7조)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한국수어 교육(제11조), 농인 가족에 대한 지원(제12조), 수어통역 지원(제16조),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제18조)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다. 입법사례

전국 자치단체 중 「한국수어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한 곳은 아직 없다. 다만, 경기도 평택시와 전라남도 여주시가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이름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두 조례는 수화 활성화를 위해 수화와 농문화 발전, 수화의 교육 및 보급,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수화 교육, 수화책임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한국수화언어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국수화언어 지원 및 활성화 조례’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 조례는 수화통역센터의 조직과 업무 관련 내용에 국한되어 있어서 새로운 법률이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들을 모두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수화언어 지원 조례 기초안을 제시하면 <표 33>과 같다.

조문 제목	주요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 ■ 한국수화언어의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농인”, “농문화”, “농정체성”, “수어통역”, “수어통역센터” 등
기본원칙 (기본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지원 및 활성화의 의의, 당위성, 가치 등 ■ 특별히 문화와 농정체성의 의미와 의의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교육, 보급, 활성화 노력 ■ 농정체성과 농문화에 대한 인정과 육성 방안 마련
기본계획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 수화언어활성화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 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 및 지원 방안 ■ 수화언어 사용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 ■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 수화언어 교육, 보급, 통역에 관한 사항 ■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 방안 ■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 시의회에 보고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관련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화언어 보급, 교육, 통역 지원 ■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지원 ■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지원 ■ 수화언어 활용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한국수어활성화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사항: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구성: 민과 관, 전문가와 농인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여성 농인의 참여 비율 고려하여 구성
수어통역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수어통역 서비스 ■ 농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화통역 사업 ■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수어통역사 전문성 강화 사업 ■ 농인 상담: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복지,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 수어통역서비스: 각종 민원(법률, 취업, 관공서 이용, 일상생활 등), 가족 문제 상담, 심리문제에 대한 통역서비스

※ 이탤릭체 글자는 다른 자치단체 조항에는 (거의) 없는 규정을 뜻함

<표 33> 서울특별시 수화언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기초안

VI. 결론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하면서 세세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에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 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한다. 조례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할 때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 조항, 그리고 장애인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공청회 등 공론화를 보장하는 ‘의견청취’ 또는 ‘주민참여’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관련 조례를 입법할 때 기본적으로 ‘계획수립’, ‘실태조사’, ‘의견청취’를 서로 연관된 하나의 묶음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례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실행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후년 계획에 반영한다는 환류 규정을 둬으로써 계획과 평가가 유기적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라 하더라도 장애여성, 중증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저출현(low-incidence) 장애인 등 이른바 ‘장애 다양성(disability diversity)’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 범주에 속한 장애인들은 더 많은 인권침해와 더 적은 사회적 지위로 인한 다중 차별(multiple discrimination)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장애인복지법」은 제6조⁴⁷⁾와 제7조⁴⁸⁾에서 각각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강조한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장에서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⁴⁹⁾와 제7

47)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8)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

조50)는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규정한다.

셋째, 주요 장애관련 조례의 경우 ‘기본이념’ 또는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그 조례의 철학, 가치, 지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제정된 장애관련 법률과 조례에서 이 조항을 세세하게 기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5년 이후 제정된 장애관련 법률인 「한국수화언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모두가 제2조에 ‘기본이념’을 기재하고 있다. 또 최근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조례에도 ‘기본이념’이나 ‘기본원칙’을 기재하는 사례가 보인다. 이를 테면,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3조(기본이념)가 대표적이다. 모든 조례에 ‘기본이념’이나 ‘기본원칙’ 조항을 둘 필요는 없겠으나, 적어도 주요 조례에는 이 조항을 기재함으로써 조례 집행자들이 조례 제정의 배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장애관련 조례의 시행과 관련된 자문기구를 다른 위원회에 통폐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따른 조치다. 시행령은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그리고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장애관련 조례의 자문위원회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다른 위원회에 통합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조례의 경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지방교통위원회’에,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희망경제위원회’에, 그리고 ‘웹접근성위원회’가 ‘정보화전략위원회’에 통합되었다. 자문(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전문성 제고 측면도 있지만 이해 관계자 등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회의 통폐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0)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다섯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추진 상황을 지방의회 해당 상임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실제로 해당 조례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이런 규정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특히,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독립적인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시의회가 조례 시행 과정에서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9),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 김미경 외(2012), 장애인분야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김영배(20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 남산(2015),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도입 방안 모색”, 2015 -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정책엑스포 자료집
- 보건복지부(2014), 2014 장애인실태조사
- 우필호(2005), 주민발의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 제정을 통해 본 거버넌스 사례 연구, 성공회대 석사학위논문.
- 이중섭 외(2008), 청소년 분야 인권조례 현황과 개선방향, 국가인권위원회
- 이중섭 외(2012),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조례 제·개정 방향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 정추영(2002), 공공시설 내 자판기 등 우선계약에 관한 조례 제정과정, 월간 복지동향 제41호
- 조소영(2009),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 부산광역시의 소수자·사회적 약자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 조윤화 외(2014),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2009), 장애관련 자치법규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한국장애인인권포럼(2012),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3개년 활동결과 보고서
- 행정안전부(2012), 자치법규 입법실무
- OECD(2013), Health at a Glance 2013.

〈참고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대법원(<http://www.scourt.go.kr/supreme>)
- 서울특별시청(<http://www.seoul.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부록 1〉 광약자치단체 장애관련 조례 연도별 제정 현황

1. 서울특별시

연도	조례수	제정 분야 (건)										
		생활 안정	인권 증진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교육 보장	여가 문화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시설 단체 육성	행정 인프라 구축	기타
1981~1985	0	0	0	0	0	0	0	0	0	0	0	0
1986~1990	0	0	0	0	0	0	0	0	0	0	0	0
1991~1995	1	0	0	0	0	0	0	0	0	0	1	0
1996~2000	0	0	0	0	0	0	0	0	0	0	0	0
2001~2005	1	0	0	0	0	0	0	0	0	0	1	0
2006~2010	1	0	0	1	0	0	0	0	0	0	0	0
2011~2015	12	0	1	2	2	3	0	0	2	0	2	0
2016 상반기	6	0	0	3	0	0	0	0	2	0	1	0
합계	21	0	1	6	2	3	0	0	4	0	5	0

2. 부산광역시

연도	조례수	제정 분야 (건)										
		생활 안정	인권 증진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교육 보장	여가 문화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시설 단체 육성	행정 인프라 구축	기타
1981~1985	0	0	0	0	0	0	0	0	0	0	0	0
1986~1990	1	0	0	0	0	0	0	0	0	1	0	0
1991~1995	1	0	0	0	0	0	0	0	0	0	0	0
1996~2000	0	0	0	0	0	0	0	0	0	0	0	0
2001~2005	1	0	0	0	0	0	0	0	0	0	1	0
2006~2010	1	0	0	0	1	0	0	0	0	0	0	0
2011~2015	14	1	1	5	0	3	0	0	2	1	1	0
2016 상반기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8	1	1	5	1	3	0	0	2	2	3	0

3. 대구광역시

연도	조례수	제정 분야 (건)										
		생활 안정	인권 증진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교육 보장	여가 문화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시설 단체 육성	행정 인프라 구축	기타
1981~1985	2	0	0	0	0	0	0	0	0	2	0	0
1986~1990	0	0	0	0	0	0	0	0	0	0	0	0
1991~1995	1	0	0	0	0	0	0	0	0	0	1	0
1996~2000	0	0	0	0	0	0	0	0	0	0	0	0
2001~2005	1	0	0	0	0	0	0	0	0	0	1	0
2006~2010	4	0	0	2	0	1	0	0	0	0	1	0
2011~2015	5	1	1	1	1	1	0	0	0	0	0	0
2016 상반기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3	1	1	3	1	2	0	0	0	2	3	0

4. 인천광역시

연도	조례수	제정 분야 (건)										
		생활 안정	인권 증진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교육 보장	여가 문화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시설 단체 육성	행정 인프라 구축	기타
1981~1985	0	0	0	0	0	0	0	0	0	0	0	0
1986~1990	0	0	0	0	0	0	0	0	0	1	0	0
1991~1995	1	0	0	0	0	0	0	0	0	1	0	0
1996~2000	1	0	0	0	0	0	0	0	0	0	0	0
2001~2005	2	0	0	0	0	0	0	0	0	0	1	1
2006~2010	5	0	0	1	1	1	0	2	0	0	0	0
2011~2015	7	1	1	2	0	2	0	0	0	0	1	0
2016 상반기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6	1	1	3	1	3	0	2	0	1	3	1

5. 광주광역시

연도	조례수	제정 분야 (건)										
		생활 안정	인권 증진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교육 보장	여가 문화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시설 단체 육성	행정 인프라 구축	기타
1981~1985	0	0	0	0	0	0	0	0	0	0	0	0
1986~1990	0	0	0	0	0	0	0	0	0	0	0	0
1991~1995	0	0	0	0	0	0	0	0	0	0	0	0
1996~2000	1	0	0	0	0	0	0	0	0	1	0	0
2001~2005	3	0	0	1	0	0	0	0	0	1	1	0
2006~2010	7	0	0	3	1	1	0	1	0	0	0	0
2011~2015	14	2	1	4	1	1	0	2	1	0	2	0
2016 상반기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25	1	1	8	2	2	0	3	2	2	2	2

6. 대전광역시

연도	조례수	제정 분야 (건)										
		생활 안정	인권 증진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교육 보장	여가 문화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시설 단체 육성	행정 인프라 구축	기타
1981~1985	0	0	0	0	0	0	0	0	0	0	0	0
1986~1990	0	0	0	0	0	0	0	0	0	0	0	0
1991~1995	1	0	0	0	0	0	0	0	0	1	0	0
1996~2000	0	0	0	0	0	0	0	0	0	0	0	0
2001~2005	1	0	0	0	0	0	0	0	0	0	1	0
2006~2010	6	0	0	2	1	1	0	0	1	1	0	0
2011~2015	13	1	1	2	1	3	0	1	2	1	1	0
2016 상반기	1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22	1	1	4	2	4	0	1	3	3	3	0

7. 울산광역시

연도	조례수	제정 분야 (건)										
		생활 안정	인권 증진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교육 보장	여가 문화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시설 단체 육성	행정 인프라 구축	기타
1981~1985	0	0	0	0	0	0	0	0	0	0	0	0
1986~1990	0	0	0	0	0	0	0	0	0	0	0	0
1991~1995	0	0	0	0	0	0	0	0	0	0	0	0
1996~2000	0	0	0	0	0	0	0	0	0	0	0	0
2001~2005	0	0	0	0	0	0	0	0	0	0	0	0
2006~2010	1	0	0	1	0	0	0	0	0	0	0	0
2011~2015	7	0	0	1	1	2	0	0	0	1	2	0
2016 상반기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8	0	0	2	1	2	0	0	0	1	2	0

8. 세종특별자치시

연도	조례수	제정 분야 (건)										
		생활 안정	인권 증진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교육 보장	여가 문화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시설 단체 육성	행정 인프라 구축	기타
1981~1985	0	0	0	0	0	0	0	0	0	0	0	0
1986~1990	0	0	0	0	0	0	0	0	0	0	0	0
1991~1995	0	0	0	0	0	0	0	0	0	0	0	0
1996~2000	0	0	0	0	0	0	0	0	0	0	0	0
2001~2005	0	0	0	0	0	0	0	0	0	0	0	0
2006~2010	0	0	0	0	0	0	0	0	0	0	0	0
2011~2015	11	2	1	3	1	1	0	0	0	0	2	1
2016 상반기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1	2	1	3	1	1	0	0	0	0	2	1

9. 경기도

연도	조례수	제정 분야 (건)										
		생활 안정	인권 증진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교육 보장	여가 문화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시설 단체 육성	행정 인프라 구축	기타
1981~1985	1	0	0	0	0	0	0	0	0	1	0	0
1986~1990	0	0	0	0	0	0	0	0	0	0	0	0
1991~1995	1	0	0	0	0	0	0	0	0	0	1	0
1996~2000	0	0	0	0	0	0	0	0	0	0	0	0
2001~2005	3	0	0	1	0	0	0	0	0	0	1	1
2006~2010	9	0	0	2	1	2	0	0	0	2	2	0
2011~2015	11	2	1	5	0	0	0	1	1	1	0	0
2016상반기	3	0	0	0	0	0	1	0	2	0	0	0
합계	28	2	1	8	1	2	1	1	3	4	4	1

10. 강원도

연도	조례수	제정 분야 (건)										
		생활 안정	인권 증진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교육 보장	여가 문화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시설 단체 육성	행정 인프라 구축	기타
1981~1985	0	0	0	0	0	0	0	0	0	0	0	0
1986~1990	1	0	0	0	0	0	0	0	0	1	0	0
1991~1995	0	0	0	0	0	0	0	0	0	0	0	0
1996~2000	0	0	0	0	0	0	0	0	0	0	0	0
2001~2005	3	0	0	0	0	0	0	0	0	1	1	1
2006~2010	4	1	0	1	1	1	0	0	0	0	0	0
2011~2015	5	0	2	2	0	0	0	0	0	0	1	0
2016 상반기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3	1	2	3	1	1	0	0	0	2	2	1

11. 충청북도

연도	조례수	제정 분야 (건)										
		생활 안정	인권 증진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교육 보장	여가 문화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시설 단체 육성	행정 인프라 구축	기타
1981~1985	0	0	0	0	0	0	0	0	0	0	0	0
1986~1990	0	0	0	0	0	0	0	0	0	0	0	0
1991~1995	0	0	0	0	0	0	0	0	0	0	0	0
1996~2000	1	0	0	0	0	0	0	0	0	1	0	0
2001~2005	1	0	0	0	0	0	0	0	0	0	1	
2006~2010	0	0	0	0	0	0	0	0	0	0	0	0
2011~2015	4	1	0	0	1	1	0	1	0	0	0	0
2016 상반기	2	0	0	0	0	1	0	0	0	0	1	0
합계	8	1	2	0	1	0	0	1	0	1	2	0

12. 충청남도

연도	조례수	제정 분야 (건)										
		생활 안정	인권 증진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교육 보장	여가 문화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시설 단체 육성	행정 인프라 구축	기타
1981~1985	0	0	0	0	0	0	0	0	0	0	0	0
1986~1990	1	0	0	0	0	0	0	0	0	1	0	0
1991~1995	0	0	0	0	0	0	0	0	0	0	0	0
1996~2000	0	0	0	0	0	0	0	0	0	0	0	0
2001~2005	3		0	1	0	0	0	0	0	0	1	1
2006~2010	5	1	0	1	1	0	0	0	1	0	1	0
2011~2015	7	1	1	1	1	2	0	0	0	1	0	0
2016 상반기	1	0	0	0	0	0	0	0	0	0	1	0
합계	17	2	1	3	2	2	0	0	1	2	3	1

13. 전라북도

연도	조례수	제정 분야 (건)										
		생활 안정	인권 증진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교육 보장	여가 문화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시설 단체 육성	행정 인프라 구축	기타
1981~1985	0	0	0	0	0	0	0	0	0	0	0	0
1986~1990	1	0	0	0	0	0	0	0	0	1	0	0
1991~1995	1	0	0	0	0	0	0	0	0	0	1	0
1996~2000	0	0	0	0	0	0	0	0	0	0	0	0
2001~2005	1	0	0	0	0	0	0	0	0	1	0	0
2006~2010	4	0	0	1	1	1	0	1	0	0	0	0
2011~2015	16	3	1	4	1	2	1	0	1	2	1	0
2016 상반기	3	0	0	1	0	0	0	1	1	0	0	0
합계	26	3	1	6	2	3	1	2	2	4	2	0

14. 전라남도

연도	조례수	제정 분야 (건)										
		생활 안정	인권 증진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교육 보장	여가 문화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시설 단체 육성	행정 인프라 구축	기타
1981~1985	0	0	0	0	0	0	0	0	0	0	0	0
1986~1990	0	0	0	0	0	0	0	0	0	0	0	0
1991~1995	1	0	0	0	0	0	0	0	0	1	0	0
1996~2000	0	0	0	0	0	0	0	0	0	0	0	0
2001~2005	1	0	0	0	0	0	0	0	0	0	1	0
2006~2010	4	0	0	0	0	1	0	0	0	0	0	1
2011~2015	12	1	1	4	2	2	0	0	1	0	1	0
2016 상반기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8	1	2	5	2	3	0	0	1	1	2	1

15. 경상북도

연도	조례수	제정 분야 (건)										
		생활 안정	인권 증진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교육 보장	여가 문화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시설 단체 육성	행정 인프라 구축	기타
1981~1985	0	0	0	0	0	0	0	0	0	0	0	0
1986~1990	0	0	0	0	0	0	0	0	0	0	0	0
1991~1995	2	0	0	0	0	0	0	0	0	1	1	0
1996~2000	0	0	0	0	0	0	0	0	0	0	0	0
2001~2005	2	0	0	1	0	0	0	0	0	0	1	0
2006~2010	1	0	0	0	1	0	0	0	0	0	0	0
2011~2015	10	1	1	1	0	3	0	1	1	1	1	0
2016 상반기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5	1	1	2	1	3	0	1	1	2	3	0

16. 경상남도

연도	조례수	제정 분야 (건)										
		생활 안정	인권 증진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교육 보장	여가 문화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시설 단체 육성	행정 인프라 구축	기타
1981~1985	0	0	0	0	0	0	0	0	0	0	0	0
1986~1990	0	0	0	0	0	0	0	0	0	0	0	0
1991~1995	2	0	0	0	0	0	0	0	0	2		0
1996~2000	1	0	0	0	0	0	0	0	0	0	1	0
2001~2005	1	1	0	0	0	0	0	0	0	0		0
2006~2010	6	1	0	0	0	2	0	1	0	0	1	1
2011~2015	5	1	0	2	1	1	0	0	0	0	0	0
2016 상반기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5	3	0	2	1	3	0	1	0	2	2	1

17. 제주도

연도	조례수	제정 분야 (건)										
		생활 안정	인권 증진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교육 보장	여가 문화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시설 단체 육성	행정 인프라 구축	기타
1981~1985	0	0	0	0	0	0	0	0	0	0	0	0
1986~1990	0	0	0	0	0	0	0	0	0	0	0	0
1991~1995	0	0	0	0	0	0	0	0	0	0	0	0
1996~2000	0	0	0	0	0	0	0	0	0	0	0	0
2001~2005	0	0	0	0	0	0	0	0	0	0	0	0
2006~2010	11	1	1	3	1	0	0	0	0	1	3	1
2011~2015	10	2	1	1	0	3	0	2	1	0	0	0
2016 상반기	2	0	0	1	0	0	0	1	0	0	0	0
합계	23	3	2	5	1	3	0	3	1	1	3	1

〈부록 2〉 광약자치단체 장애관련 조례 목록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조례

기준일: 2016. 6. 30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1995-03-20
2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2005-07-21
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07-05-29
4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01-13
5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1-01-13
6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011-01-13
7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2011-07-28
8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2012-03-15
9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2012-07-30
10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9-28
11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2013-03-28
12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2013-08-01
13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2013-08-01
14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5-05-14
15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2015-07-30
16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1-07
17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	2016-01-07
18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2016-01-07
19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2016-01-07
20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2016-03-24
21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2016-05-19

부산광역시 장애관련 조례

기준일: 2016. 6. 30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2011-05-04
2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검사 조례	2012-02-22
3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2012-07-11
4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3-04-03
5	부산광역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2013-07-10
6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2013-07-10
7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2013-07-10
8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3-07-10
9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3-07-31
10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2014-01-01
11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2014-01-01
12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2014-02-12
13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5-04-01
14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2015-09-23

대구광역시 장애관련 조례 목록

기준일: 2016. 6. 30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83-02-01
2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984-06-20
3	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1994-09-30
4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5-08-10
5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07-10-30
6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2008-09-10
7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2008-10-30
8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2010-04-20
9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05-30
10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012-03-30
11	대구광역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3-05-16
12	대구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2014-11-10
13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2015-10-30

인천광역시 장애관련 조례 목록

기준일: 2016. 6. 30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1994-01-01
2	인천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1996-11-04
3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2002-03-25
4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2005-09-26
5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08-06-23
6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2008-08-04
7	인천광역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08-08-04
8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2009-11-09
9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0-11-15
10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2011-01-10
11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1-01-10
12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2011-05-09
13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0-24
14	인천광역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2012-01-16
15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1-09
16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12-28

광주광역시 장애관련 조례 목록

기준일: 2016. 6. 30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설치 운영 조례	1997-11-24
2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2003-07-01
3	광주광역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2004-07-30
4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05-02-18
5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2006-07-15
6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 조례	2008-03-28
7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08-08-01
8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2009-05-15
9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2009-07-15
10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09-08-03
11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2010-01-15
12	광주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	2011-02-21
13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3-02
14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1-04-01
15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11-05-13
16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1-07-01
17	광주광역시의회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2011-07-01
18	광주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2012-07-10
19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조례	2012-11-01
20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13-07-01
21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2013-10-01
22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	2014-01-01
23	광주광역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	2014-01-01
24	광주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지원 조례	2014-04-01
25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	2015-03-01

대전광역시 장애관련 조례 목록

기준일: 2016. 6. 30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조례	1994-01-11
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05-09-27
3	대전광역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2007-08-17
4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2008-12-26
5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009-02-27
6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2009-12-31
7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2010-01-08
8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2010-12-31
9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08-05
10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2011-08-05
11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2012-06-15
12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2012-10-11
13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2013-06-07
14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2013-11-08
15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12-31
16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2014-03-07
17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2015-08-14
18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2015-08-14
19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2015-10-08
20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2015-10-08
21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	2015-10-08
22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6-06-10

울산광역시 장애관련 조례 목록

기준일: 2016. 6. 30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08-05-08
2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012-10-11
3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2012-11-15
4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2013-04-09
5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4-05-01
6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조례	2014-10-16
7	울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2014-10-16
8	울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2014-12-31

세종특별자치시 장애관련 조례 목록

기준일: 2016. 6. 30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2012-07-02
2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2-07-02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2-09-30
4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1-07
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4-10
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2013-04-10
7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6-10
8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	2013-06-10
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6-10
10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2013-09-30
11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	2015-09-30

경기도 장애인 관련 조례 목록

기준일: 2016. 6. 30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82-05-31
2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1994-11-09
3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2001-06-11
4	경기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2004-07-19
5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05-07-25
6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7-11-12
7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2008-01-07
8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08-12-12
9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08-12-30
1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09-04-21
11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009-08-13
12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2009-12-16
13	경기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2010-03-18
14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2010-11-08
15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1-05-03
16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2012-03-05
17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4-06
18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4-06
19	경기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2013-05-01
20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2013-11-11
21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2014-05-02
22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14-10-21
23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2015-04-08
24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4-08
25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	2015-11-04
26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016-02-24
27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2016-02-24
28	경기도여성장애인임신·출산·양육지원조례	2016-06-07

강원도 장애인관련 조례 목록

기준일: 2016. 6. 30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988-09-13
2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2003-09-20
3	강원도 재활병원 조례	2004-04-10
4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05-12-30
5	강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008-05-09
6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8-12-29
7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2009-10-30
8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09-10-30
9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9-23
10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2012-08-03
11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2013-03-15
12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2015-04-10
13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2015-10-08

충청북도 장애인관련 조례 목록

기준일: 2016. 6. 30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1998년경 (전산에 미기재)
2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5-08-05
3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1-08-12
4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2012-06-08
5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013-10-31
6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2014-10-31
7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1-01
8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6-02-26

충청남도 장애인관련 조례 목록

기준일: 2016. 6. 30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990-12-31
2	충청남도 장애인상 조례	2003-04-30
3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2005-05-10
4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2005-10-31
5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007-12-31
6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2009-04-15
7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2009-10-30
18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10-02-10
9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2010-11-10
10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1-03-30
11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2011-09-20
12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12-31
13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7-30
14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4-30
15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9-30
16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5-12-30
17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6-06-08

전라북도 장애관련 조례 목록

기준일: 2016. 6. 30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1987-08-04
2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1994-10-07
3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005-12-30
4	전라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2008-10-31
5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2008-10-31
6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09-04-24
7	전라북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2009-07-31
8	전라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1-07-01
9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03-09
10	전라북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013-10-04
11	전라북도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11-08
12	전라북도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11-08
13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2013-2-15
14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2014-01-06
15	전라북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2014-10-17
16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1-30
17	전라북도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	2015-02-27
18	전라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7-03
19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2015-08-07
20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2015-08-07
21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2015-10-12
22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015-12-11
23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15-12-28
24	전라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2016-03-11
25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2016-06-17
26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6-17

전라남도 장애관련 조례 목록

기준일: 2016. 6. 30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운영 조례	1991-04-04
2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05-09-29
3	전라남도 장한 장애인상 조례	2008-05-27
4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2008-05-27
5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0-05-13
6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0-12-27
7	전라남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11-07-05
8	전라남도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2-02-27
9	전라남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2012-05-25
10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조례	2012-12-31
11	전라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4-05
12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2013-05-20
13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규정 일괄개정 조례	2013-05-20
14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2013-07-05
15	전라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2013-11-07
16	전라남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2014-05-12
17	전라남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2014-08-14
18	전라남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4-12-26

경상북도 장애관련 조례 목록

기준일: 2016. 6. 30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993년 이전 (전산에 미기재)
2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1994-10-07
3	경상북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2005-11-17
4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05-12-29
5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2008-03-31
6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9-16
7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1-11
8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13-12-30
9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4-04-21
10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2014-12-29
11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2015-05-21
12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2015-09-24
13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5-11-05
14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2015-11-05
15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12-31

경상남도 장애관련 조례 목록

기준일: 2016. 6. 30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경상남도립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1992-01-14
2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992-06-26
3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2000-01-19
4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2003-03-20
5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06-04-13
6	경상남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2009-07-02
7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 조례	2009-08-13
8	경상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2009-10-15
9	경상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2010-02-11
10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0-05-06
11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2011-05-12
12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11-08-18
13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2012-01-12
14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2012-01-12
15	경상남도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0-11

제주도 장애인관련 조례 목록

기준일: 2016. 6. 30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2006-04-12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2006-10-18
3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2006-10-18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2006-10-18
5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2007-03-07
6	제주특별자치도 장한 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2007-03-07
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2008-05-14
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2008-10-08
9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009-06-03
1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2009-06-03
1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0-11-10
1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1-05-11
1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06-29
14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2012-11-12
1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3-05-15
16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1-15
17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2014-12-31
18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2014-12-31
1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2015-05-06
20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2015-07-08
2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2016-01-11
2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16-03-16

서울시 장애 관련 자치법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일 : 2016년 11월

발행처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발행인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김경호

주관부서 : 입법담당관(입법담당관 배선희, 주무관 이수호, 입법조사관 최현중)
보건복지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김태호, 주무관 유선숙)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전화) 02-3705-1170 FAX :02-3705-1486 (입법담당관)

전화) 02-3705-1346 FAX :02-3705-1398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과제제안 : 서울특별시의회 우창윤 의원

연구기관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책임연구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에이블허브 5층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전화) 02-833-3095 FAX :02-833-3096

발간등록번호 : 51-6110000-001357-01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당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 이후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